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2021. 9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NAMGU DISTRICT COUNCIL BUSAN
METROPOLITAN CITY

제 출 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본 연구소에 연구 의뢰한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
다.

2021년 9월
부산경남정책연구소(주)

참여연구진

책임연구 부산경남정책연구소(주) 이지영 연구위원
공동연구 부산경남정책연구소(주) 안일규 대표

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2020년부터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사회에서 사회경제와 사회복지분야에 큰 악영향을 주었음
- 특히,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복지분야는 기존의 열악한 구조에 더해 더욱 취약해졌으며, 사회복지의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관 또한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시대에 많은 변화를 요구 받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 민간위탁되어 온 부산광역시 남구의 5개 사회복지관(남구노인복지관, 남구장애인복지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감만종합사회복지관, 용호사회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민간위탁사항을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위드코로나시대 사회복지관으로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2. 현황 및 평가

- 최근 사회에서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남구의 경우 이미 초고령화시대(고령인구 비중 20.2%)에 들어서는 등 사회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시점에 위치함
- 다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 속도가 조금 늦춰졌을 뿐이지 그 내재적 성장은 코로나 극복 이후 더욱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따라서 남구의 자체적 복지관 수요에 맞는 시설 증강의 노력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개선이 요구됨

1) 자체평가

■ 전체운영비·보조금 수입

- 5개 수탁기관의 전체운영비는 2019년도에 176억원에서 2020년에 154억원으로 12.6% 감소하였음
- 최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비추어 2020년에 운영비의 감소원인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 특히, 남구노인복지관(26.2% 감소)과 용호종합사회복지관(20.7% 감소)의 운영비 감소 폭이 컸으며, 남구장애인복지관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약 0.7%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5개 수탁기관 합산 2019년도에 140억원에서 2020년에 129억원으로 7.6% 감소하였음
- 용호종합사회복지관(18.0% 감소), 남구노인복지관(17.7% 감소), 남구장애인복지관(7.4%)은 감소하였던 반면, 남구종합사회복지관(5.2% 증가), 감만종합사회복지관(0.1% 증가)은 증가하였음
- 전체 사회복지관의 전체운영비에서 보조금의 비중은 2019년도에 80.0%에서 2020년도에 84.2%로 증가하여 4.2% 의존도가 증가하였음
- 남구노인복지관(10.4% 증가), 감만종합사회복지관(10.1% 증가), 남구종합사회복지관(4.6% 증가), 용호종합사회복지관(2.4% 증가)은 증가한 반면, 남구장애인복지관은 6.5% 감소하였음
- 전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체운영비 및 보조금이 줄어 들었으며, 이는 전체 사회복지관 운영 위축을 의미함
- 복지관의 운영위축은 결국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복지행정의 어려움도 가중시킬 것임
- 따라서 위드코로나시대로의 전환 시 복지관의 역할 또한 맞춤형 업무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자체평가 결과

- 대부분의 사회복지관들이 코로나 이후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과 대면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실질적 복지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내었음
- 남구의 사회복지관 관리행정에 대하여는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잦은 보직이동과 전문성 부족의 문제점을 밝혔다
- 특히, 코로나에 대처한 사회복지관운영에 걸맞는 관리행정이 필요하나 공공복지행정의 경직성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확실적인 보조금보다는 사회복지관의 정성·정량적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산정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책정 고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됨
- 사회복지관별로는 후원금의 비중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자체사업 진행

- 을 위한 별도의 후원조직의 필요성도 제기됨
- 또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특화사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관의 복지활동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 남구는 특별히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의회에서는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함

2) 정부 평가(2019년 보건복지부 평가)

- 평가지표수 및 배점

평가영역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배점(%)	배점(%)
A. 시설 및 환경	5	4
B. 재정 및 조직운영	10	4
C. 인적자원 관리	20	28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8	50
E. 이용자의 권리	5	6
F. 지역사회 관계	12	8
총계	100	100

- 평가결과 등급

등급	A	B	C	D	F
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

- 개별시설 평가결과

시설명	평균 등급	평가 영역별 등급					
		시설및 환경	재정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 관계
남구노인복지관	A	A	A	A	A	A	B
감만종합사회복지관	A	A	B	B	A	A	A
남구종합사회복지관	A	A	B	A	A	A	A
용호종합사회복지관	A	A	B	B	A	A	A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으로는
 - ①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 ② 수탁기관 관리·감독
 - ③ 위드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분석됨

■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

-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통일된 선정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작동되지 않도록 표준 공고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심사기준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심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의회의 감시기능 강화

- 의회의 감시기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고와 감사의 의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다만, 수탁기관의 지나친 감사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는 감사예고제를 도입이 필요함

■ 평가체계의 개선

- 수탁기관이 매년 평가를 위해서 평가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행정에서는 흠을 잡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상호발전을 위한 평가가 되도록 사전에 평가항목에 있어 수탁기관과의 세밀한 소통이 필요함
- 수탁기관의 지나치게 높은 목표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심사에서부터 현실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며, 조직·인사 등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편으로 평가체계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

1)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 위탁기관의 선정의 문제는 대부분 ① 공고문, ② 평가기준, ③ 선정결과의 공개에서 발생함

- 공고문 : 관리부서에 따라 공고문의 차이 발생 → 표준 공고문 필요
- 평가기준 : 공고문 상 차이 및 평가기준 공개 여부 → ① 부산광역시 사회복지 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 지표 기준 필요, ② 공공성 지표 추가(서비스의 적절성,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사업운영 투명성, 사업운영의 사회가치지표)
- 선정결과 :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선정결과에 의회 검증 및 공개

2) 수탁기관 관리·감독

-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해 행정부서, 의회,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규정 필요이 하나 수탁기관의 자발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수평적 구조로서 민간위탁 협치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다만 이에 대한 의회와 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의 조치가 요구됨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비교를 통한 위탁 선정 및 운영과정 비교 >

구분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사전동의	시의회 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 편성	규정 없음
선정	부산광역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이의 신청	선정 결정 15일 이내 이의신청 15일 이내 결과 통지(10일 연장 가능)	규정 없음
계약 체결	위탁기간 3년 이내	규정 없음
위탁기간 갱신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평가 후 3년의 범위에서 갱신 가능	규정 없음
사용료 등 징수	징수 가능	규정 없음
위탁 금지	재위탁금지(일부사무에 관해 시장의 승인 후 재위탁 가능)	규정 없음
회계감사	위탁금액 10억원 이상 사업연도마다 회계 감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결산서와 회계감사 제출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검사

구분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지도·감독	지도·감독 인정되는 때 실시	수시 지도·점검
사무편람	시장 승인 후 작성 및 비치	규정 없음
처리상황 감사	시정조치, 임직원 인사조치 요구 인사조치 결과 시의회 보고	규정 없음
성과평가	위탁기관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 실시 후 시의회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규정 없음
교육실시	담당공무원 및 수탁기관 대상 민간위탁 사무 처리 교육 의무	규정 없음

3) 위드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

- 위드코로나로 대변되는 사회복지관 운영의 방식변화는 ‘사회복지관 내부로 끌어 들이는 복지사업’에서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복지사업’으로 변화, ‘대면방식’에서 ‘비대면방식’으로 변화,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대처가 필요할 것임

■ 사회복지관 운영개선

- ①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복지사업
- ② 비대면 방식 강화
- ③ 사회복지종사자 복지 향상

■ 복지프로그램 개선

- ① 위드코로나 복지프로그램 개발
- ② 위드코로나 복지프로그램 확산

■ 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

- ① 수탁기관 간의 네트워크
- ② 수탁기관·서비스수혜 당사자 조직 간의 네트워크
- ③ 민·관·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목 차

I 편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대상과 범위 및 연구기준	4
1) 대상	4
2) 범위	4
3) 연구의 기준	5

II 편 현황분석

1. 남구 사회적 현황	9
1) 도시 현황	9
2) 인구 구조	12
3) 사회복지 정책	15
2. 남구 복지관별 운영 현황	23
1) 기본현황	23
2) 복지관별 현황	25
3.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및 정의	46
1)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46
2) 사회복지관의 정의와 역할	47
4.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및 정의	52
1) 법적 근거	52
2) 민간위탁의 정의	53

III 편 사회복지체계 내에서의 민간위탁 평가와 개선방안

1.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제도의 의의	59
1) 사회복지와 민간위탁제도의 목적	59
2) 법률적 범위에서 사회복지와 민간위탁	60
2.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역할	62
1) 사전적 역할	62
2) 사후적 역할	65
3.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평가	66
1) 위탁기관의 자체평가	66
2) 위탁기관에 대한 정부평가(보건복지부)	77
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쟁점과 개선방안	85
1) 민간위탁 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85
2)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86
3) 수탁기관 관리·감독	105
4) 위드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	113

I편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의 개념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응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최소한의 삶을 만족시켜 주는 제도로서 발전해 왔으나 현재에는 이러한 일정한 상황, 일정한 계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에서 모든 국민이 똑같이 혜택의 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로 진화하고 있음
- 복지의 제공방식에 따라서는 수혜방식에 따라 금액, 현물, 서비스로 직접 제공하는 방식과 인프라 구축 등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직접 제공방식은 현금·현물의 물질적 제공방식과 교육서비스, 치유서비스 등의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또한 나누어 짐
- 복지관은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화된 복지관과 교육·보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종합복지관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복지관은 사회복지의 공적 안전망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시설임
- 공공시설로서 이들 복지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대부분의 시설이 전문단체에 위탁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직영의 방법을 택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음
- 부산광역시 남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공복지시설로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감만종합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남구노인복지회관, 남구장애인복지관이 위탁운영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공공위탁 사회복지시설 외 많은 복지시설들이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다만, 이러한 복지사업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과중한 경쟁과 투명하지 못한 운영,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복지관 내에서의 인권문제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고 위드코로나시대 사회복지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로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사전동의와 사후통제권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2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대상과 범위 및 연구기준

1) 대상

-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 에서 민간위탁한 복지관으로 그 대상이 되는 복지관은 ‘감만종합사회복지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남구노인복지관’, ‘남구장애인복지관’의 5곳임
-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 나사함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은 별도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규정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함

2) 범위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2가지로 나누어 수행함
 - 첫째 민간위탁의 관점에서 복지관의 운영
 - 둘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의 복지관의 운영

- 민간위탁의 관점에서 복지관의 운영은 다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과 민간영역에서 기관의 민간위탁 운영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구분하여 다룸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의 복지관 운영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의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영향과 전망, 향후 복지관 운영에 있어 위드코로나 대응형 복지관으로서의 추구방향을 다루었음

3) 연구의 기준

- 연구의 기준연도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2019년 자료와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음
- 내용적으로는 민간위탁시설로서의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성, 그리고 위드코로나 시대 사회복지관의 역할 전망, 대책 및 구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사회복지적 관점과 수탁기관의 관점에서 동시에 다루었음
- 법령적으로는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조례’를 기준으로 삼았음

<표 1> 사회복지관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조례 현황

조례명	제정년도	목적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0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2015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2015년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12조, 제20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노인회관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조례	2021년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II편 현황분석

1. 남구 사회적 현황

1) 도시 현황

- 부산광역시 남구는 행정구역으로는 대연동,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으로 나누며, 부산광역시에서 해운대구, 수영구와 함께 동부산권에 속하며, 바다와 접한 감만컨테이너부두 등 해상무역의 중심지이며, 이기대를 중심으로 한 해상자연공원의 중심지이기도 함
- 대연동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동명대학교, 경성대학교가 위치한 대학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서면상권의 시작점과 끝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문현동 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금융허브를 형성하여 향후 부산광역시의 미래경제의 핵심적 위치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
- 이처럼 남구는 부산광역시의 교육, 경제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부산항 배후 지역으로서 영도-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대양으로 나가는 관문이기도 함
- 또한 남구의 북부지역은 문현동, 대연동 중심의 경제교통의 요지로서 부산 도시철도 2호선이 관통하여 부산광역시의 교통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의 남부지역은 해상무역경제권과 해상자연이 어우러진 해상벨트임
- 도시구조적으로는 2014년 부산국제금융센터의 이전으로 세수가 늘어나 도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연동, 용호동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부유층 및 중산층 거주지역과 문현동, 우암동, 감만동의 고지대 거주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간의 빈부의 격차가 큼
- 또한 부경대 용당캠퍼스, 동명대학교, 부경대 대연캠퍼스, 경성대로 이어지는 교육벨트가 남구를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부산항대교를 통해 영도구와 광안대교를 통해 해운대를 연결하는 해상벨트를 또한 가지고 있음
- 바다로는 감만부두, 신선대부두가 부산항과 연계되어 있어 해상무역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이들 지역에 대한 관광기능의 강화를 위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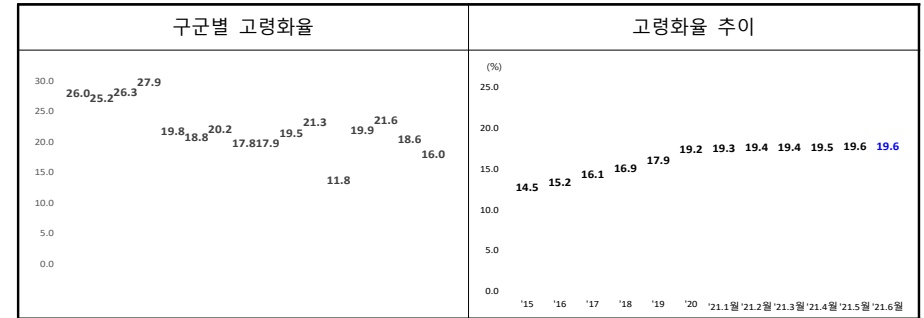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생산가능(15~64세) 인구: 2,382천명으로 총인구의 69.8%
 - 인구비중이 사상구, 북구, 부산진구가 높고, 영도구, 동구, 서구는 낮으며, 남구의 생산가능 인구비율은 69.2%로 부산전체 평균에 못미침
- 고령인구(65세 이상) : 669천명 ▶ 고령화율 19.6%
 - 영도구, 동구, 중구 등 15개 구·군은 15.0% 이상이며, 특히, 20% 이상인 구는 7개로 영도구, 동구, 중구, 서구, 수영구, 금정구, 남구(20.2%)가 이에 속함
- 전국 및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였을 때 부산광역시는 평균 이상으로 고령화된 도시로 분석되며 중위연령이 서울특별시에 비해 3.9세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남구 또한 전국적으로는 2.3세, 서울특별시에 비해서는 3.7세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그 격차 또한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남구의 인구구조는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가 부산전체 평균보다 높은 반면, 생산가능 인구는 부산전체 평균보다 약간 낮음
- 따라서 남구는 전국/서울특별시에 비해 고령화된 반면, 부산광역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평균적임

<표 3>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단위 : 명, %, 세)

구·군	총 인구			구성비			중위 연령
	유소년 (0-14세)	생산가능 (15-64세)	고령 (65세 이상)	유소년 (0-14세)	생산가능 (15-64세)	고령 (65세 이상)	
부산광역시	359,361	2,382,023	668,968	10.5%	69.8%	19.6%	46.8
전국	6,151,690	37,132,956	8,537,023	11.9%	71.7%	16.5%	44.3
서울특별시	936,146	7,058,479	1,548,517	9.8%	74.0%	16.2%	42.9
중구	2,086	29,449	11,084	4.9	69.1	26.0	51.5
서구	8,942	72,142	27,299	8.3	66.6	25.2	50.7
동구	6,425	59,886	23,671	7.1	66.6	26.3	51.5
영도구	8,488	73,394	31,628	7.5	64.7	27.9	53.2
부산진구	32,485	255,185	71,226	9.1	71.1	19.8	46.5
동래구	31,560	187,302	50,728	11.7	69.5	18.8	46.2
남구	28,530	186,422	54,540	10.6	69.2	20.2	46.6
북구	29,475	205,370	51,002	10.3	71.8	17.8	47.4
해운대구	46,435	285,139	72,061	11.5	70.6	17.9	46.3
사하구	31,010	220,081	60,768	9.9	70.6	19.5	47.7
금정구	20,844	162,697	49,540	8.9	69.8	21.3	48.4
강서구	27,715	100,369	17,186	19.1	69.1	11.8	39.2
연제구	22,160	143,748	41,265	10.7	69.4	19.9	46.7
수영구	15,743	123,473	38,352	8.9	69.5	21.6	47.2
사상구	18,853	156,003	39,954	8.8	72.6	18.6	48.4
기장군	28,610	121,363	28,664	16.0	67.9	16.0	42.7

[3] 부양을 및 고령화 지수

- 부산광역시의 총부양비는 43.2명임(* 총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 또는 노년인구 수)
 - 유소년부양비 : 15.1명
 - 노년부양비 : 28.1명
 - 노령화지수 : 186.2명(*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 1백명 당 고령인구 수)으로 우리나라 노령화지수 138.8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 남구의 고령화율은 20.2%로 부산광역시의 평균 19.6%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됨
 - UN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화율이 전체 인구 가운데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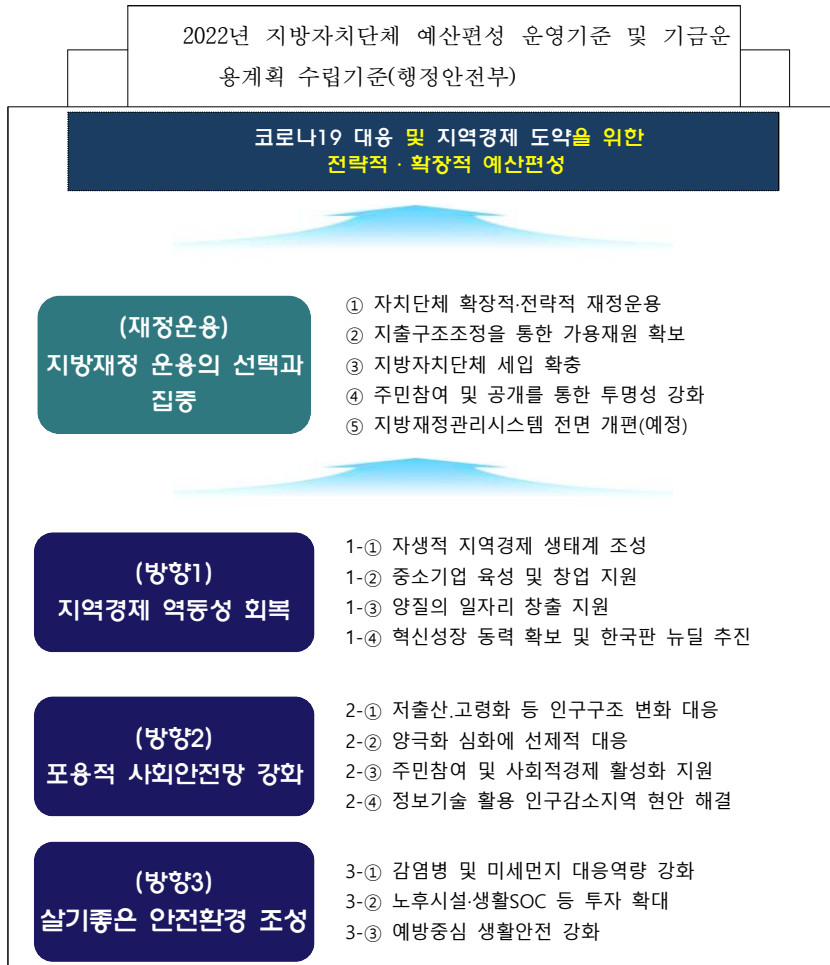
<표 4> 부산광역시 고령화율 및 노령화지수 (단위 : 1백명당 명, %)

연도별	'15	'16	'17	'18	'19	'20	'21.5월	'21.6월	증감
고령화율	14.5	15.2	16.1	16.9	17.9	19.2	19.6	19.6	0.05
총부양비	35.3	36.1	37.5	38.7	40.3	42.4	43.1	43.2	0.09
유소년부양비	15.6	15.5	15.4	15.2	15.1	15.1	15.1	15.1	-0.01
노년부양비	19.6	20.6	22.2	23.5	25.2	27.3	28.0	28.1	0.10
노령화지수	125.4	133.3	144.2	154.4	166.8	181	185.4	186.2	0.72

3) 사회복지 정책

(1) 복지예산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복지예산의 세출여건으로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를 표현하고 있음



- 인구구조에 따른 복지예산기준의 재편성이 예상되며, 단순히 복지수요에 양적이 대처가 아니라 질적인 대처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예산의 즉각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특히,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정수급에 대한 선제적 차단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자치단체별 민간보조금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편성·운영하되,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은 삭감 등 검토
 -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신설되는 보조금 관리규정 철저 준수 : 실적보고서 검증(사업당 3억이상), 회계감사(총액 10억 이상), 중요재산 부기등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 부정수급 적발 강화 및 적발 시 엄격한 제재조치 부과·환수
 - ※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수행배제, 제재부가금(최대 5배), 가산금 등
- 자치단체 전체 예산 규모는 부산광역시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2,543,135,277천원이며 이중 사회복지분야예산은 4,438,923,897천원이었으며, 코로나 이후인 2021년에는 전체 예산이 14,415,991,457천원,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5,316,236,433천원으로 증가하였음
- 사회복지비중 또한 2019년 35.39%이었던 것이 2021년 36.88%로 사회복지비중이 증가하였음
- 남구의 경우 사회복지비중이 2019년 54.09%에서 2021년 60.32%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부산광역시 전체 사회복지비중보다 높으나 부산구계인 61.23%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원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복지비중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부산전체 계보다 많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회복지체계의 중심은 본청보다는 일선 구청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5> 사회복지예산비중

(단위 : 천원, %)

구분	자치단체	사회복지비중	사회복지분야예산	자치단체예산규모
2019년	전국계	28.64	66,158,835,642	231,015,190,420
	부산계	35.39	4,438,923,897	12,543,135,277
	부산본청	39.82	4,645,189,774	11,666,118,934
	부산구계	59.26	3,123,657,295	5,271,035,798

구분	자치단체	사회복지비중	사회복지분야예산	자치단체예산규모
2019년	부산중구	35.01	57,341,913	163,773,133
	부산서구	59.43	148,422,557	249,760,512
	부산동구	58.34	137,443,663	235,598,438
	부산영도구	57.84	172,007,279	297,400,945
	부산부산진구	65.52	342,807,675	523,244,785
	부산동래구	60.91	205,288,902	337,033,107
	부산남구	54.09	190,937,468	352,999,502
	부산북구	69.91	295,783,273	423,064,059
	부산해운대구	63.42	351,551,257	554,328,439
	부산사하구	65.35	308,879,108	472,681,102
	부산금정구	55.57	225,086,802	405,057,947
	부산강서구	37.75	116,376,547	308,289,053
	부산연제구	58.58	178,924,159	305,421,835
	부산수영구	58.17	160,414,709	275,766,370
	부산사상구	63.39	232,391,983	366,616,571
	부산군계	39.24	195,527,414	498,270,500
	부산기장군	39.24	195,527,414	498,270,500
2020년	전국계	29.66	75,101,548,282	253,226,288,101
	부산계	35.28	4,858,997,755	13,774,503,587
	부산본청	40.11	5,050,449,789	12,590,658,059
	부산구계	59.38	3,505,393,508	5,902,917,654
	부산중구	35.73	63,592,193	177,978,170
	부산서구	55.92	162,296,137	290,241,682
	부산동구	59.2	153,925,807	260,019,079
	부산영도구	58.5	193,240,392	330,345,102
	부산부산진구	64.6	388,963,579	602,133,713
	부산동래구	58.61	229,981,640	392,393,421
	부산남구	57.05	238,629,067	418,269,894
	부산북구	69.44	332,871,757	479,394,922
	부산해운대구	63.43	374,604,485	590,567,261
	부산사하구	64.72	313,286,984	484,037,868
	부산금정구	58.83	255,435,884	434,219,877
	부산강서구	41.46	150,695,507	363,465,853
	부산연제구	61.13	214,319,899	350,582,730
	부산수영구	55.91	176,222,387	315,207,462
	부산사상구	62.15	257,327,790	414,060,620
	부산군계	40.43	232,870,525	575,914,421
	부산기장군	40.43	232,870,525	575,914,421

구분	자치단체	사회복지비중	사회복지분야예산	자치단체예산규모
2021년	전국계	30.59	80,476,660,547	263,091,735,830
	부산계	36.88	5,316,236,433	14,415,991,457
	부산본청	40.96	5,448,674,168	13,301,004,419
	부산구계	61.23	3,839,426,265	6,270,093,070
	부산중구	43.14	67,959,915	157,539,647
	부산서구	57.18	177,206,822	309,923,702
	부산동구	59.3	169,329,698	285,536,202
	부산영도구	59.84	207,397,134	346,608,734
	부산부산진구	66.69	423,719,632	635,375,742
	부산동래구	60.94	239,577,837	393,132,312
	부산남구	60.32	289,316,174	479,611,492
	부산북구	69.3	350,798,220	506,203,402
	부산해운대구	63.74	416,624,098	653,595,943
	부산사하구	66.23	356,412,099	538,127,040
	부산금정구	59.2	272,914,484	461,036,260
	부산강서구	47.23	169,476,449	358,803,055
	부산연제구	58.9	217,996,915	370,094,753
	부산수영구	60.46	203,435,543	336,452,636
	부산사상구	63.29	277,261,245	438,052,150
	부산군계	39.13	247,880,730	633,410,717
	부산기장군	39.13	247,880,730	633,410,717

자료 : 지방재정 365

[2] 사회복지시설 현황

- 부산광역시는 2021년 현재 총 224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어 있음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만,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사회복지법인은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구분되는데 시설법인(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며, 지원법인(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은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임
- 부산광역시의 경우 광역시계의 시설법인은 서울특별시와 비슷한 규모인 22.5%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원법인은 11.3%를 차지하고 있어 지원법인보다는 시설법인의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결론적으로는 부산광역시의 지원예산 투입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표 6> 전국 사회복지법인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시설법인	지원법인	구분	합계	시설법인	지원법인
전국	2985	2711	274	경기	272	230	42
서울	306	214	92	강원	193	170	23
부산	224	208	16	충북	167	149	18
대구	185	178	7	충남	230	213	17
인천	53	45	8	전북	242	236	6
광주	143	139	4	전남	221	217	4
대전	104	93	11	경북	203	194	9
울산	49	46	3	경남	256	244	12
세종	21	21	0	제주	116	114	2

자료 : 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2021년.

<표 7>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 현황

연번	법인명	법인종류 (시설/ 지원)	허가일자	연번	법인명	법인종류 (시설/ 지원)	허가일자	연번	법인명	법인종류 (시설/ 지원)	허가일자
1	선재단	시설법인	2006-03-06	77	인천사회사업재단	시설법인	1960-12-07	153	다솜원	시설법인	2004-07-20
2	한국아동복지회	시설법인	1974-08-22	78	요명심사회복지재단	지원법인	2008-11-04	154	세림원	시설법인	2005-07-29
3	수원당자선재단	지원법인	2010-10-18	79	오순절평화의마을	시설법인	1987-09-30	155	불국토	시설법인	1995-07-22
4	새샘복지재단	시설법인	2002-04-16	80	천사들의집	시설법인	2010-06-30	156	성경복지재단	시설법인	2012-03-26
5	운암원	시설법인	2010-08-06	81	한서사회복지재단	시설법인	1966-10-14	157	참향복지재단	시설법인	2010-05-18
6	내원	시설법인	1998-03-31	82	금계	시설법인	2011-02-16	158	정향복지재단	시설법인	2005-05-12
7	실버복지재단	시설법인	2004-12-20	83	느티나무	시설법인	2006-02-10	159	창조은복지재단	시설법인	2006-04-12
8	한국청소년복지회	지원법인	1980-09-22	84	은화복지재단	시설법인	1957-06-05	160	청십자사회복지회	시설법인	1983-08-26
9	팔복	시설법인	1957-08-29	85	살롱복지재단	시설법인	2008-08-12	161	한성복지재단	시설법인	1997-10-15
10	영락복지재단	시설법인	1957-10-18	86	장산복지	시설법인	2014-02-25	162	성우복지재단	시설법인	1996-08-26

연번	법인명	법인종류 (시설/ 지원)	허가일자	연번	법인명	법인종류 (시설/ 지원)	허가일자	연번	법인명	법인종류 (시설/ 지원)	허가일자
11	안나원	시설법인	1958-10-25	87	해운대복지재단	시설법인	2010-09-06	163	성우희망재단	지원법인	2012-08-28
12	그리스도교원선	시설법인	1962-02-28	88	성현원	시설법인	1970-04-01	164	대성원	시설법인	2011-06-21
13	천마	시설법인	1967-07-03	89	영화	시설법인	2004-08-10	165	반석복지재단	시설법인	2007-06-29
14	부산라이프하우스	시설법인	1955-10-15	90	의연복지재단	시설법인	1990-09-26	166	새암	시설법인	2004-12-30
15	봉생사회복지회	시설법인	1998-01-01	91	박애원	시설법인	1962-02-28	167	송암회	시설법인	2007-09-17
16	빛과소금복지재단	시설법인	2005-01-21	92	은혜의집	시설법인	1964-03-09	168	송희재단	시설법인	2009-07-31
17	동남복지재단	시설법인	1991-07-06	93	누리꿈마을	시설법인	1998-03-31	169	예은복지재단	시설법인	2012-08-07
18	동백	시설법인	2010-07-06	94	와이케이빌 사회복지재단	지원법인	2008-12-26	170	사회복지복지법인 육사복지재단	시설법인	2009-03-09
19	큰빛	시설법인	2000-07-26	95	선우엘복지재단	지원법인	2017-10-13	171	좋은세상	시설법인	2006-05-08
20	미애원	시설법인	1994-10-12	96	이로온	시설법인	1957-11-23	172	청광	시설법인	1999-08-16
21	청학원	시설법인	1957-10-15	97	애아원	시설법인	1955-01-20	173	효성복지재단	시설법인	2009-01-21
22	천성아동재활원	시설법인	1961-02-06	98	좋은친구들	시설법인	2006-07-19	174	애림복지재단	시설법인	2006-11-09
23	청학농예원	시설법인	1958-07-25	99	밝은세상	시설법인	2007-10-23	175	천혜복지재단	시설법인	1957-08-09
24	신고려	시설법인	2011-07-01	100	행복한오늘	시설법인	2000-06-23	176	부산광역시사회복지 협의회	지원법인	1998-11-25
25	생명의전화	시설법인	2004-05-25	101	장림동새마을복지 재단	지원법인	2013-12-23	177	연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법인	2020-05-02
26	시민이윤영하는 복지법인우리마을	시설법인	2014-02-14	102	효인원	시설법인	2011-06-29	178	좌전4동어린이집	시설법인	1994-03-07
27	주는사랑복지재단	시설법인	2010-09-29	103	평화원	시설법인	1984-02-16	179	평화원	시설법인	1956-06-06
28	행복한복지재단	시설법인	2009-12-29	104	호산나복지재단	시설법인	2000-07-01	180	성지어린이집	시설법인	1965-05-15
29	천지인	시설법인	2016-10-06	105	플로라재단	지원법인	2006-01-27	181	엘림어린이집	시설법인	1995-12-29
30	화영도량	시설법인	2008-07-01	106	한나	시설법인	1957-03-15	182	향기복지재단	시설법인	2007-10-15
31	동일	지원법인	2012-11-07	107	자매여숙	시설법인	1977-01-28	183	동산	시설법인	2004-03-17
32	동인복지재단	시설법인	2012-06-15	108	금정총림범어	시설법인	1997-01-20	184	우리	시설법인	2005-02-28
33	신애재활원	시설법인	1957-04-09	109	로사리오 카리타스	시설법인	1997-07-29	185	큰빛	시설법인	2004-07-16
34	가공복지	시설법인	2011-06-24	110	세정나눔재단	지원법인	2011-04-28	186	영인사회복지재단	시설법인	2005-08-11
35	토리	시설법인	2016-05-03	111	동래원	시설법인	1958-11-18	187	해맑은	시설법인	2003-06-13
36	매실보육원	시설법인	1957-05-31	112	신망애원	시설법인	1957-12-18	188	살롱어린이집	시설법인	1990-11-16
37	송원	시설법인	1999-11-30	113	애광원	시설법인	1958-06-18	189	한아름	시설법인	1995-08-16
38	도영	시설법인	2009-12-24	114	선양	시설법인	2008-11-13	190	미래복지재단	시설법인	2004-07-19
39	황천	시설법인	1971-07-15	115	자성	시설법인	2009-05-01	191	청인	시설법인	2004-10-21
40	해월	시설법인	1998-07-13	116	경현복지재단	지원법인	2011-05-17	192	청운어린이집	시설법인	1997-11-26
41	원광	시설법인	2002-10-11	117	대원	시설법인	2004-12-08	193	창신어린이원	시설법인	1992-06-20
42	늘봄	시설법인	2007-12-21	118	예달복지재단	시설법인	2006-04-14	194	한샘사회복지재단	시설법인	2007-02-19
43	창주	시설법인	2009-11-09	119	선아원	시설법인	1959-08-06	195	동해	시설법인	1995-08-03
44	청록원	시설법인	2010-05-24	120	동지복지재단	지원법인	2010-05-07	196	파랑꽃	시설법인	2004-07-22
45	효림원	시설법인	2010-06-04	121	상록원	시설법인	2005-10-24	197	재송어린이집	시설법인	1981-07-16
46	광애원	시설법인	2007-01-05	122	소애원	시설법인	2004-10-06	198	솔송어린이집	시설법인	1995-12-16
47	지원	시설법인	2009-05-23	123	보성	시설법인	2004-08-30	199	예진어린이집	시설법인	1997-10-20

연번	법인명	법인종류 (시설/ 지원)	허가일자	연번	법인명	법인종류 (시설/ 지원)	허가일자	연번	법인명	법인종류 (시설/ 지원)	허가일자
48	꿈아리	시설법인	2005-10-06	124	동성원	시설법인	1957-09-21	200	다대포유아교육원	시설법인	1995-08-16
49	양덕사회문화원	시설법인	1992-04-06	125	희락원	시설법인	1965-01-12	201	대지원	시설법인	1994-10-12
50	성지원	시설법인	2005-01-12	126	남광사회복지회	시설법인	1946-12-01	202	명성	시설법인	2003-08-28
51	예술원	시설법인	2004-08-12	127	성애원	시설법인	1970-01-01	203	선영어린이집	시설법인	1997-10-15
52	안음전복지재단	시설법인	1952-05-08	128	베테스다	시설법인	1967-08-29	204	이화어린이집	시설법인	1997-10-10
53	우리집원	시설법인	1956-01-30	129	동향원	시설법인	1986-07-15	205	청송사회복지재단	시설법인	2006-06-20
54	자인	시설법인	2001-07-31	130	진애원	시설법인	2007-01-09	206	한빛	시설법인	2003-09-15
55	창해	시설법인	2009-11-24	131	인혜	시설법인	2015-04-17	207	현성원	시설법인	2004-07-26
56	령강복지재단	시설법인	2006-11-15	132	모심원	시설법인	2004-08-30	208	석화원	시설법인	2004-09-15
57	문수복지재단	시설법인	2018-02-02	133	경성복지재단	시설법인	2010-08-31	209	가락어린이집	시설법인	1996-11-07
58	새빛기독교보육원	시설법인	1954-02-05	134	정아	시설법인	2004-08-12	210	포도원	시설법인	1996-08-08
59	계영교육문화원	시설법인	1993-02-18	135	소양	시설법인	1946-04-20	211	대지어린이집	시설법인	1995-08-16
60	나사함복지재단	시설법인	2005-07-13	136	마리아모자원	시설법인	1956-10-16	212	애은	시설법인	1994-03-17
61	든솔	시설법인	2015-02-10	137	안국	시설법인	2014-06-05	213	육산재단	시설법인	1995-10-17
62	자연수복지재단	시설법인	1994-10-12	138	새길공동체	시설법인	2014-02-10	214	정성원	시설법인	2005-04-26
63	평화의집	시설법인	1960-03-03	139	성우원	시설법인	1964-12-05	215	백합원	시설법인	2004-10-22
64	창선종합복지공동체	시설법인	1952-05-23	140	가온	시설법인	1986-06-25	216	혜승복지재단	시설법인	2006-01-02
65	정화복지재단	시설법인	1967-12-02	141	양지동산	시설법인	1973-12-08	217	은솔원	시설법인	2004-10-04
66	성문	시설법인	2004-02-04	142	태양의집	시설법인	2005-07-13	218	도산	시설법인	1996-03-29
67	은광복지재단	시설법인	2011-04-04	143	송계	지원법인	1985-10-31	219	애송	시설법인	2004-08-30
68	로템복지재단	시설법인	2005-10-17	144	호산	시설법인	1957-11-15	220	정운재단	시설법인	2013-05-27
69	금성원	시설법인	2009-06-22	145	혜원	시설법인	1996-07-22	221	상만육영회	시설법인	1997-09-12
70	청록사회복지재단	시설법인	2004-02-07	146	동주	시설법인	1999-11-24	222	부산유스센터	시설법인	1952-05-08
71	공덕향	시설법인	2000-11-15	147	재세	시설법인	2016-12-07	223	효성	시설법인	1995-08-03
72	연우복지재단	시설법인	2009-05-19	148	종덕	시설법인	1957-09-30	224	(북)전원	시설법인	1995-08-16
73	동진복지재단	시설법인	2018-09-28	149	나눔과행복	시설법인	2008-03-26	225	칠암	시설법인	1996-11-21
74	한솔사회복지재단	시설법인	2004-08-25	150	로사사회봉사회	시설법인	1994-08-04	226	한솔어린이집	시설법인	1995-08-16
75	성실원	시설법인	1957-10-30	151	청전	시설법인	2010-11-03				
76	영진복지재단	시설법인	1988-04-21	152	에덴육아원	시설법인	1957-11-26				

자료 :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 남구의 경우 종합복지시설로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외 2곳,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남구노인복지관 외 7곳,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남구장애인복지관 외 7곳, 아동복지시설은 새빛기독교보육원, 자활시설은 남구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시설은 남구자원봉사센터가 있음

<표 9> 남구 사회복지시설 현황

시설 구분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종합 복지 시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기대공원로 7(용호동)	(051)628-6737	www.yongho.or.kr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동제당로 258(우암동)	(051)647-3655	www.namguwelfare.or.kr
	감만사회복지관	우암로 84-1(감만동)	(051)634-3415	www.gamman.or.kr
노인 복지 시설	남구노인복지관	못골로 97-10(대연동)	(051)628-1291	www.ngswc.or.kr
	구세군부산요양원	용소로7번길 105(대연동)	(051)623-3323	inoin.hompee.com
	령강노인복지센터	천제등로 56-4(대연동)	(051)624-9351	cafe.daum.net/RGWC
	한솔보금자리	동명로101번길 57-13(용호동)	(051)625-7356	cafe.daum.net/625-7356
	애림노인요양센터	수영로 263(대연동)	(051)625-0221	www.aerim.kr
	해피실버타운	동명로101번길 37-7(용호동)	(051)621-5003	-
장애인 복지 시설	남구장애인복지관	조각공원로11번길 38(대연동)	(051)626-6991	www.namgurc.or.kr
	나사함 발달 장애인복지관	못골변영로 70(대연동)	(051)627-8521	www.nasaham.or.kr
	성프란치스코의집	수영로266번길 51(대연동)	(051)622-1652	www.franciscohome.or.kr
	소화영아재활원	무민사로 19(감만동)	(051)644-1729	www.sohwa.or.kr
여성 복지 시설	사랑샘	유엔평화로10번길 62(대연동)	(051)621-7003	www.sarangsaeam.or.kr
	희망샘	천제등로 18-6(대연동)	(051)621-7020	www.hymangsaem.or.kr
	희망의 전화	황령대로 488(대연동)	(051)623-1399	www.woman21.org
아동 복지 시설	새빛기독교보육원	신선로 452(용당동)	(051)623-4011	happylog.naver.com/sebit.do
자활 시설	남구지역자활센터	신선로 406, 201호(용당동, 동명빌딩)	(051)638-7212	www.psnamgu.or.kr
자원 봉사 시설	남구자원봉사센터	지계골로 52-15(문현동)	(051)636-1365	vt.bsnamgu.go.kr

자료 :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2. 남구 복지관별 운영 현황

1) 기본현황

- 남구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복지관은 감만종합사회복지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남구노인복지관, 남구장애인복지관으로 이중 남구노인복지관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남구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 나머지 3개 복지관은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종합복지관임
- 시설면적으로는 용호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이 가장 넓은 연면적 2,534㎡이었으며, 종사자수로는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에서 위탁운영하는 남구노인복지관이 2020년 기준 정규직 12명, 비정규직 44명으로 가장 많았음
- 다만 전체적으로 남구노인복지관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이후인 2020년 종사자의 수가 크게 줄었으며, 특히 비정규직 수가 76명에서 32명이 줄어 들면서 일자리가 감소하였음
- 다른 복지관은 감만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카리타스)이 정규직 1명 감소, 비정규직 2명이 증가하는 변화 외에 일자리가 늘거나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간 프로그램 수는 남구노인복지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 프로그램 수가 늘어난 반면 남구장애인복지관,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은 감소하였음
- 연간이용자수는 대부분의 복지관이 이용자수가 줄어든 반면 남구노인복지관은 오히려 이용자수가 증가하였음
- 연평균증가율로 판단하였을 때 남구노인복지관은 연평균 5.7% 증가하였으며,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이 가장 낮은 -35.4%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용호종합사회복지관(-23.1%), 남구종합사회복지관(-16.5%), 남구장애인복지관(-2.4%)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는 25.4%로 줄어 들어 연평균 1/4(25.4%) 규모로 이용자수가 줄어 들었음
- 특이점으로는 남구노인복지관은 종사자수가 줄어든 반면, 연간프로그램수와 연간이용자수는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표 10> 복지관별 운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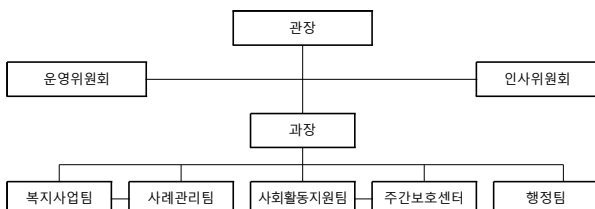
복지관명	위탁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시설 연면적 (㎡)	종사자수 (2019년 기준)		종사자수 (2020년 기준)		연간 프로그램 수			연간이용자수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남구노인복지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184331-000032	1,860	13	76	12	44	204	204	218	11,095	11,563	12,404
남구장애인복지관	(사)부산광역시남구장애인 협회	184321-000180	2,177.8	21	-	21	-	139	124	125	2,441	2,595	2,327
감만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 카리타스	184732-000149	1,661	12	6	11	8	58	58	54	356,431	269,27	148,93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우리마을	184132-000296	2,005	16	14	17	12	118	132	161	211,395	211,99	147,26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문수복지재단	184332-000886	2,534	16	18	16	18	112	126	132	380,697	341,91	225,02

자료 :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2) 복지관별 현황

(1) 남구노인복지관

- 남구는 부산광역시 16개 자치구 중 노인인구가 54,507명으로 진구(71,204명), 사하구(60,415명)에서 3번째로 노인인구가 많은 자치구이며, 노인인구비중은 20.2%를 나타내고 있음. 보통 초고령화사회의 노령인구비중 기준이 20%임을 감안할 때 남구는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음
- 남구노인복지관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에서 2009년 최초 수탁받은 이래 2013년, 2018년 계수탁받아 2023년 2월까지 수탁운영할 예정이며, 조직적으로는 현재 복지사업팀, 사례관리팀, 사회활동지원팀, 주간보호센터, 행정팀의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사자수는 2019년 정규직 13명, 비정규직 76명의 총 89명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폭 감소하여 정규직 12명, 비정규직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탁조건은 다음과 같음
 1.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위탁운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2. 노인복지관 시설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금지
 3. 정부보조금 외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
 4. 현재 위탁시설에 근무 중인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 별도의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남구노인복지관 수탁사업을 관장하고 있음
- 남구노인복지관 조직도



○ 시설현황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부지	건물	
남 구 노인복지관	남구 못골로 97-10(대연동)	1,405㎡	1,860㎡ (지하1층/지상4층)	식당 및 주방, 주간보호시설, 휴게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정보화교실 등

- 층별 현황

층별	용도	면적(㎡)
지상 4층	당구장, 탁구장	163.10
지상 3층	프로그램 3, 4실, 자원봉사자실, 정보화교육실, 바둑, 장기실 쉼터	372.42
지상 2층	프로그램 1, 2실, 이미용실, 주간보호실, 강당, 휴게실	688.98
지상 1층	사무실, 관장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식당	555.99
지하 1층	전기, 기계실	79.55

○ 주요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분야
교육·문화사업	• 사회교육사업(평생교육) • 노인행사사업 • 조사·연구사업 • 출판·홍보사업
지역복지사업	• 사회참여지원사업 • 노인일자리사업 • 기능회복 및 건강증진사업 • 자원봉사관리사업 • 후원자관리사업 • 정서지원사업
재가복지사업	• 생활지원사업 •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
남구노인주간보호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주간보호사업

- 남구노인복지관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수를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는 2020년을 비교하였을 때 프로그램의 수는 그대로 204개 프로그램임
- 복지관 이용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연간 11,095명이었던 것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0년 11,563명으로 약간 증가내지 보합세를 보임
- 다만 2019년 복지관 등록자수가 11,600명이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이용자수가 5년간 평균적으로 679명씩 꾸준히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음을 증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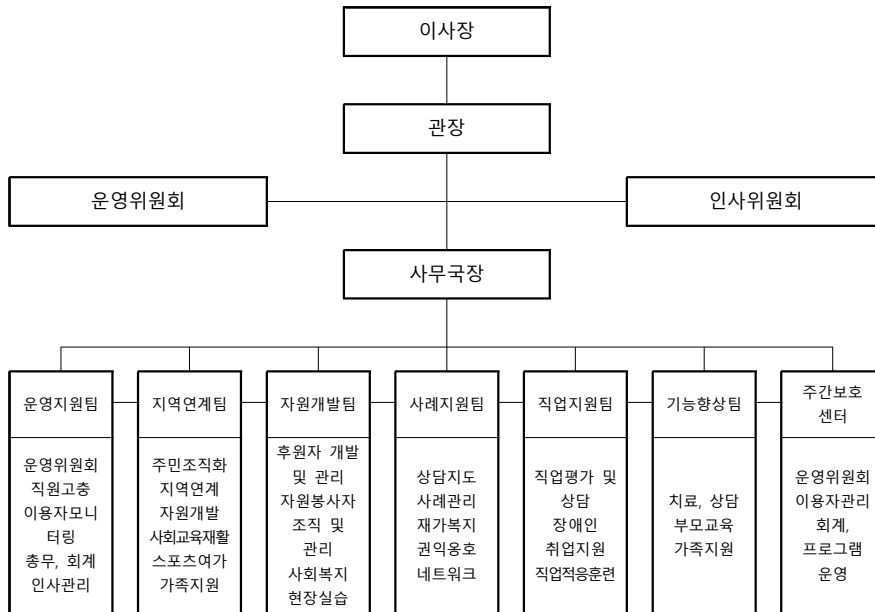
<표 11> 남구노인복지관 이용현황

복지관명	연간 운영 프로그램수 (수/총시간)		복지관 이용자수(2019년 기준)						
	2019년	2020년	아동	청소년(14세~18세)	장애인	노인(65세이상)	여성	기타	계
남구노인복지관	204	204				10,853		242	11,095
	-	-							
			복지관 이용자수(2020년 기준)						
			아동	청소년(14세~18세)	장애인	노인(65세이상)	여성	기타	계
						11,306		257	11,563



[2] 남구장애인복지관

- 남구의 장애인수는 13,066명으로 남구 총인구수의 4.3%에 해당됨
- 인구수 대비 장애인 수는 부산광역시 평균 5.2%로 평균보다 0.9%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남구장애인복지관은 당사자 단체인 사단법인 부산광역시남구장애인협회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위탁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이며, 조직은 운영지원팀 등 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종사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동일하게 2021년에도 21명의 정규직을 유지하고 있음
- 위탁조건은 다음과 같음
 1.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침, 위탁운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2. 장애인복지관 시설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금지
- 남구장애인복지관 조직도



○ 시설현황

- 남구장애인복지관은 2007년 개관하여, 2016년 1차려 증축을 거쳤음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대지	건물면적	
남구장애인 복지관	남구 조각공원로 11번길 35(대연동)	1,447.2㎡	2,148.79㎡ (지상4층)	언어치료실, 감각통합실, 직업재활실, 제과제빵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식당 및 주방, 주간보호시설, 휴게실 등

- 층별 현황

층별	면적	시설내역
지상 4층	543㎡(165평)	발전기실(1), 전기실(2), 기계실(3), 강당(4), 방송실(5), 준비실(6), 다용도프로그램실(7)
지상 3층	549㎡(166평)	체력단련실(1), 프로그램실(2), 식당(조리실)(3), 자원봉사자 휴게실(4), 제과제빵조리실(5)
지상 2층	505㎡(153평)	사무실(1), 관장실(2), 감각통합실(3), 언어치료실(4), 언어치료실Ⅱ(5), 소회의실(6), 직업재활·적응훈련실(7)
지상 1층	551㎡(167평)	의료재활실(1), 물리치료실(2), 미술치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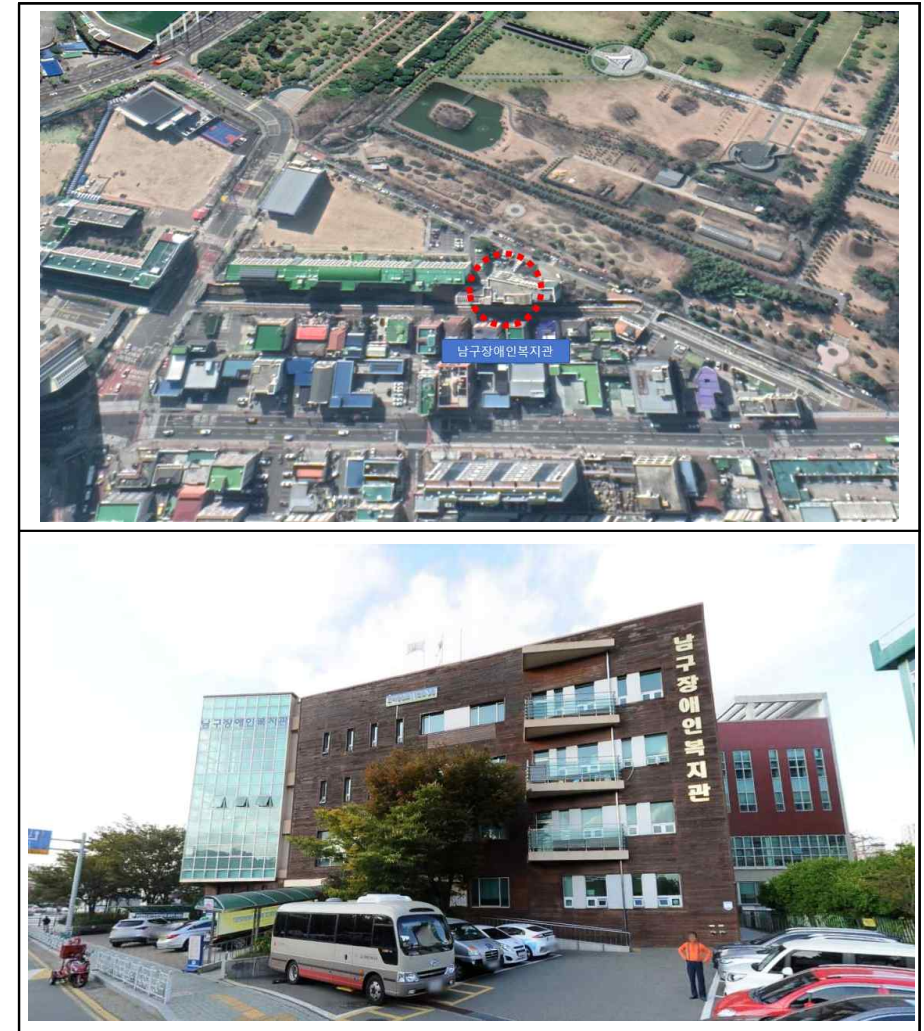
○ 주요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분야
운영지원팀	운영위원회, 직원고충, 이용자모니터링, 총무, 회계, 인사관리
지역연계팀	주민조직화, 지역연계, 자원개발, 사회교육재활, 스포츠여가, 가족지원
자원개발팀	후원자 개발 및 관리, 자원봉사자 조직 및 관리, 사회복지, 현장실습
사례지원팀	상담지도, 사례관리, 재가복지, 권익옹호, 네트워크
직업지원팀	직업평가 및 상담, 장애인 취업지원, 직업적응훈련
기능향상팀	치료, 상담, 부모교육, 가족지원
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이용자관리, 회계, 프로그램 운영

- 남구장애인복지관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수를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2020년을 비교하였을 때 프로그램의 수는 2019년 139개이며 연간프로그램 운영시간은 30,594시간이었던 것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0년에는 연간프로그램 수는 125개, 프로그램운영시간 24,895시간으로 각각 감소하였음
- 다만 이용자수는 2019년 2,441명이었던 것이 2020년 2,595명으로 늘어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프로그램수와 시간은 줄어든 반면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은 장애인들에게 특히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시설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시설서비스 외에 재가서비스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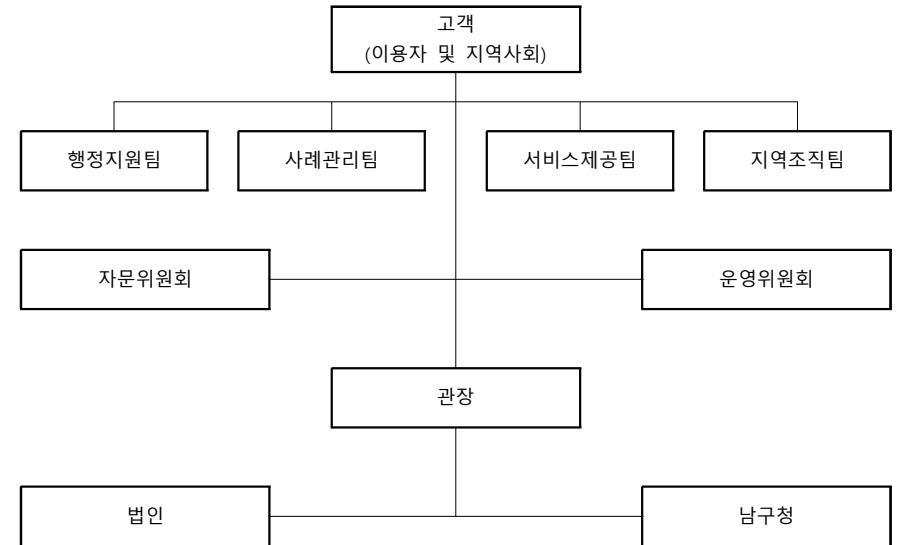
<표 12> 남구장애인복지관 이용현황

복지관명	연간 운영 프로그램수 (수/총시간)		복지관 이용자수(2019년 기준)						
	2019년	2020년	아동	청소년 (14세~18세)	장애인	노인 (65세 이상)	여성	기타	계
남구 장애인 복지관	139	124			2,441				2,441
			복지관 이용자수(2020년 기준)						
	30,54	24,85	아동	청소년 (14세~18세)	장애인	노인 (65세 이상)	여성	기타	계
					2,595				2,595



[3] 감만종합사회복지관

-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 7부두 및 감만부두 사이를 둘러 싸고 있는 감만동에 위치하며, 대부분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취약계층 보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설립된 이래 카톨릭재단에서 운영해왔으며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카리타스에서 1998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1일까지임
- 종사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정규직 12명, 비정규직 6명의 18명이었던 것이 2020년 정규직 11명, 비정규직 8명으로 정규직 1명이 줄고, 비정규직 2명이 늘어났음
- 위탁조건은 다음과 같음
 1.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위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2. 사회복지관 시설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금지
 3. 보조금 외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
 4. 수탁법인 변경시 기존 감만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은 시설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고용승계가 원칙임
 5. 수탁법인 변경 시 신규 수탁법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수탁법인의 감만종합사회복지관 관련사업 내용을 승계하여야 함
 6.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법인 선정 후 별도 계약에 의해 정함
 7.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준수
- 조직운영에 있어 특이점은 조직도 최상단에 이용자를 배치함으로써 감만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음. 행정지원팀 등 총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음



○ 시설현황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대지	건물연면적	
감만종합사회복지관	부산.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8,453㎡	1,660.73㎡ (지상5층)	무료급식소, 주방, 프로그램실, 사무실, 상담실, 강당, 컴퓨터실, 작은도서관 등

- 층별 현황

층별	면적	시설내역
지상 1층	411.1㎡	강남콩교실, 남남식당, 달그락주방
지상 2층	247.6㎡	첫째 사무실(+관장실), 둘째 사무실
지상 3층	506.7㎡	3학년 1~4반, 큰마루 강당
지상 4층	247.6㎡	컴퓨터실 4학년, 육아용품대여점
지상 5층	247.6㎡	감만꿈터도서관, 5학년

○ 주요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분야
사례관리	감만 1동, 감만 2동, 대연 4동, 용당동 지역 저소득 위기가정 및 문제행 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	가족기능 강화, 급식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 지원, 경제적 지원, 보건의 료 지원
교육문화사업	아동교육 및 평생교육
지역조직화 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사업, 자원개발 및 관리사업

-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수를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2020년을 비교하였을 때 프로그램의 수는 2019년과 2020년 동일하게 5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연간프로그램 운영시간도 마찬가지로 14,500시간을 운영하였음
- 또한 이용자수는 2019년 12,454명, 2020년 12,436명으로 거의 동일하였음
- 이처럼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 거의 변화없이 운영되었으며, 타 복지관에 비해 프로그램 수는 작았지만 운영시간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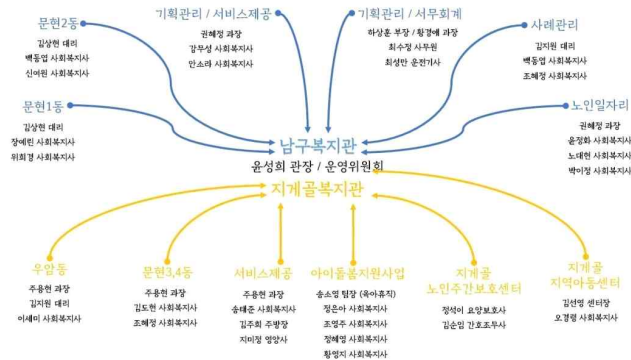
<표 13> 감만종합사회복지관 이용현황

복지관명	연간 운영 프로그램수 (수/총시간)		복지관 이용자수(2019년 기준)						
	2019년	2020년	아동	청소년(14세~18세)	장애인	노인(65세이상)	여성	기타	계
감만 종합 사회 복지관	58	58	430	88	67	2,071	220	9,578	12,454
			복지관 이용자수(2020년 기준)						
	14,500	14,500	아동	청소년(14세~18세)	장애인	노인(65세이상)	여성	기타	계
			305	103	74	2,305	186	9,463	12,436



(4) 남구종합사회복지관

-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 7부두 배후지역인 용호동에 위치하며, 감만종합사회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었으나 최근 재개발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섬으로서 많은 복지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복지관과 아울러 경성어린이집을 함께 운영되고 있음
-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1990년 개관되어 2020년부터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이 위탁운영해왔으며 위탁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 종사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정규직 16명, 비정규직 14명의 308명이었던 것이 2020년 정규직 17명, 비정규직 12명으로 정규직 1명이 늘고, 비정규직 2명이 줄어들었음
- 위탁조건은 다음과 같음
 1.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보육사업 안내,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영유아 보육 조례, 위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미이행시 위탁 해지함
 2. 사회복지관 시설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금지
 3. 보조금 외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
 4. 수탁법인 변경시 기존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은 시설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고용승계가 원칙임
 5. 수탁법인 변경 시 신규 수탁법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수탁법인의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관련사업 내용을 승계하여야 함
 6.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법인 선정 후 별도 계약에 의해 정함
- 조직운영에 있어 특이점은 시민 중심의 수평적 운영구조로 각 행정동별 담당자를 두고 있음



○ 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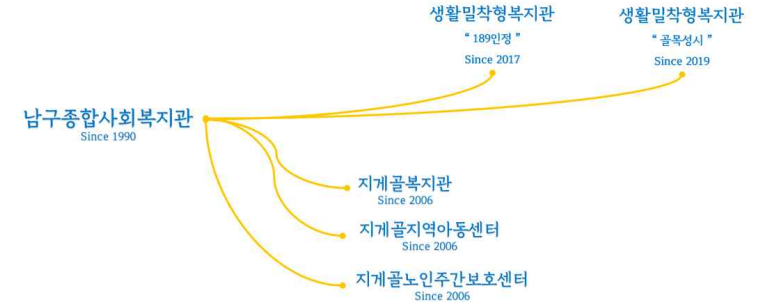
-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대지	건물연면적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남구 동제당로 258(우암동)	5,157㎡	2,005.45㎡ (지하1층/지상2층)	경로식당, 어린이집,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성인인지적장애인주간보호, 북카페, 미술교실
지게골 분관	남구 지게골로 139-33(문현동)	341㎡	828.40㎡ (지하1층/지상4층)	경로식당, 경로당, 노인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가족상담센터, 사무실

- 어린이집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 모	보육아동 (정원)	보 육 교직원
경성어린이집	남구종합사회복지관 1층	281.25㎡	77	12

○ 주요사업 내용



-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수를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2020년을 비교하였을 때 프로그램의 수는 2019년에 118개 프로그램이었던 것이 2020년 132개 프로그램으로 14개 프로그램이 증가하였으며, 연간프로그램 운영시간도 마찬가지로 25,000시간에서 33,000시간으로 증가하였음

- 이용자수는 2019년 3,193명에서 2020년 2,110명으로 약 34% 감소하였음
- 이처럼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 비대면 수업,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따라 프로그램의 수와 시간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용자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4>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이용현황

복지관명	연간 운영 프로그램수 (수/총시간)		복지관 이용자수(2019년 기준)						
	2019년	2020년	아동	청소년(14세~18세)	장애인	노인(65세이상)	여성	기타	계
남구종합사회복지관	118	132	148	33	13	1,049	1,260	690	3,193
	복지관 이용자수(2020년 기준)								
	25,000	33,000	아동	청소년(14세~18세)	장애인	노인(65세이상)	여성	기타	계
			97	27	21	832	908	225	2,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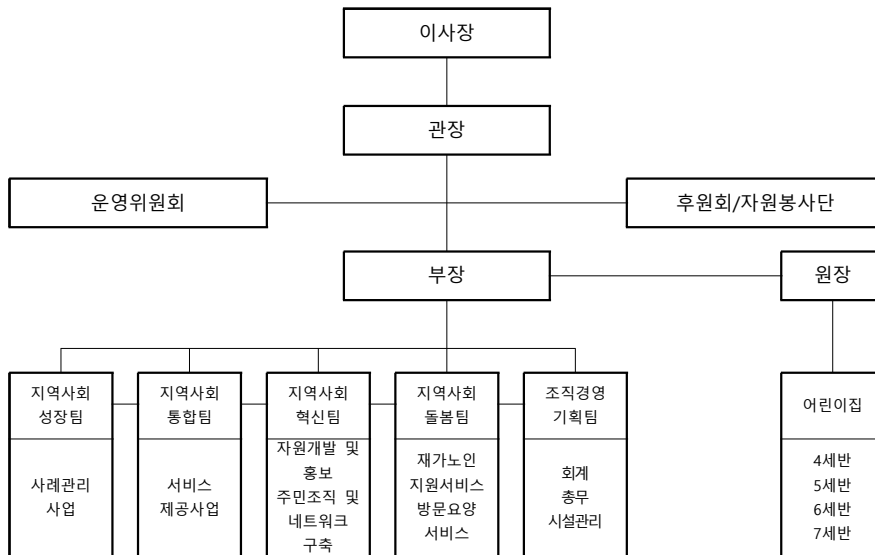


[5] 용호종합사회복지관

-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이기대와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및 동명대학교의 중심에 위치하며, 신시가지로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함
-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1996년 개관되어 계속 불교계에서 위탁운영하여, 2019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해왔으며 2024년 4월 30일까지임
- 종사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정규직 16명, 비정규직 18명의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같은 종사자수를 유지하고 있음
- 위탁조건은 다음과 같음
 1.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위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2. 사회복지관 시설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금지
 3. 보조금 외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

4. 수탁법인 변경시 기존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은 시설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고용승계가 원칙임
5. 수탁법인 변경 시 신규 수탁법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수탁법인의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련사업 내용을 승계하여야 함
6.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법인 선정 후 별도 계약에 의해 정함
7.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준수

○ 조직운영에 있어 특이점은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음



○ 시설현황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대지	건물연면적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남구 이기대공원로 7(용호동)	2,180㎡	2,461.95㎡ (지하1층/지상3층)	경로식당, 육아용품대여점, 프로그램실 용호문화센터, 용호어린이집,, 용호노인 사랑방, 상담발달센터, 북카페

- 용호어린이집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 모	보육아동 (정원)	보 육 교직원
용호어린이집	용호종합사회복지관 1층	298.25㎡	84	8

○ 주요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분야
지역사회성장팀	전문사례관리, 위기가정지원
지역사회통합팀	- 영유아 : 꿈나무아동발달상담센터, 유아통합놀이지원센터, 아동사회교육 - 아동청소년 : 학교 밖 초등학교 통합적 방과후 교실, 청소년 꿈 이룸 장학금, 청소년 꿈 한아름 사업, 조소득가정 아동청소년 특식 지원 및 문화직업체험, 학습 및 정서 멘토링 사업 - 가족 : 가온 플랫폼, 절기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노인·장애인 : 경로식당, 어르신 생신잔치, 효심 동행 길, 독거어르신 장수잔치, 목욕서비스, 용호노인대학 - 노인사회활동지원 : 노노케어, 실버안전순찰대, 시설관리도우미, 우리학교 깔고미 - 기타 특화사업
지역사회혁신팀	- 지역주민 : 주민주도형 망르 건강증진사업, 중장년 독거남성 발굴 사업, 텃밭사업, 지역주민만남프로젝트, 북카페, 용호장승축제, 용호어학당, 노인사랑방, 시설대관 및 물품 대여 - 자원봉사 - 후원 및 홍보

○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수를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2020년을 비교하였을 때 프로그램의 수는 2019년에 182개 프로그램이었던 것이 2020년 204개 프로그램으로 22개 프로그램이 증가하였으며, 연간프로그램 운영시간은 1,920시간으로 동일하였음

○ 이용자수는 2019년 2,630명에서 2020년 2,760명으로 4.9% 증가하였음

○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에 관계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복지 수요가 계속 해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표 15> 복지관 이용현황

복지관명	연간 운영 프로그램수 (수/총시간)		복지관 이용자수(2019년 기준)						
	2019년	2020년	아동	청소년(14세~18세)	장애인	노인(65세 이상)	여성	기타	계
용호종합사회복지관	182	204	500	80	50	1,000	1,000	-	2,630
	복지관 이용자수(2020년 기준)								
	1,920	1,920	아동	청소년(14세~18세)	장애인	노인(65세 이상)	여성	기타	계
			550	100	60	1,000	1,000	50	2,760



<표 11> 복지관별 운영 조건

연번	민간위탁 시설명	위탁업체	위탁기간	위탁조건
1	남구노인복지관	(학교법인)동명문화학원	2018.3.1.~ 2023.2.28.	1.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위탁운영 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2. 노인복지관 시설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금지 3. 정부보조금 외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 4. 현재 위탁시설에 근무 중인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5.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준수
2	남구장애인복지관	(사)부산광역시남구장애인협회	2018.5.1.~ 2023.4.30.	1.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침, 위탁운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2. 장애인복지관시설공간을목적사업이외의타용도로사용금지 3.보조금외위탁운영에따른일체의경비는수탁자가부담
3	감만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로사리오카리타스	2018.7.1.~ 2023.6.31.	1.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위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2. 사회복지관시설공간을 목적사업이외의 타용도로 사용금지 3. 보조금외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 4. 수탁법인 변경시 기존 감만종합사회복지관직원은 시설장을제외하고 나머지는 고용승계가 원칙임 5. 수탁법인 변경시 신규수탁법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존수탁법인의 감만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사업 내용을 승계하여야 함 6.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법인선정 후 별도계약에 의해 정함. 7.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준수

연번	민간위탁 시설명	위탁업체	위탁기간	위탁조건
4	남구종합사회 복지관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	2020.1.1.~ 2024.12.31	1.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보육사업 안내,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영유아 보육 조례, 위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미이행시 위탁 해지함 2. 사회복지관시설공간을목적사업이외의타용도로사용금지 3. 보조금외위탁운영에따른일체의경비는수탁자가부담 4. 수탁법인변경시기존남구종합사회복지관직원은시설장을제외하고나머지는 고용승계가 원칙임 5. 수탁법인변경시신규수탁법인은계약일로부터10일이내에기존수탁법인의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관련사업 내용을 승계하여야 함 6. 위탁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수탁법인선정후별도계약에의해정함
5	용호종합사회 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2019.5.1.~ 2024.4.30.	1.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위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2. 사회복지관시설공간을 목적사업이 외의 타용도로 사용금지 3. 보조금 외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 4. 수탁법인 변경 시 기존 용호종합사회복지관직원은 시설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고용승계가 원칙임 5. 수탁법인 변경 시 신규수탁법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수탁법인의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련사업 내용을 승계하여야 함 6.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법인 선정 후 별도 계약에 의해 정함 7.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준수

자료 :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3.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및 정의

1)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정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및 제23조의 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2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4.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1]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 삭제 <2014. 12. 24.> ② 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③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2. 8. 3.> ⑥ 삭제 <2012. 8. 3.> ⑦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관의 정의와 역할[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2021.]

[1] 사회복지관의 정의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 여기서 지역사회복지란 주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함
- 또한 사회복지관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인도주의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존엄유지를 전제로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2] 사회복지관의 목표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3] 사회복지관의 연혁

- 1906년 : 원산 인보관운동에서 사회복지관사업 태동
- 최초로 태화여자관 설립
- 1926년 : 원산에 보혜여자관 설립
- 1930년 : 서울에 인보관 설치
- 1975년 : 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 회원국 가입
- 1976년 :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 설립(22개 사회복지관)
- 1983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
- 1986년 : 사회복지관 운영·국고보조사업지침 수립
- 1989년 :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시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
- 1989년 :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제정
- 1989년 :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설립
- 2004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신설
 - *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폐지
- 2005년 :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
- 2012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8.5. 시행)
 - *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규정 신설

[4]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 사회복지관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인도주의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존엄유지를 전제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가 지역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성하여야 한다.

나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다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 자율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마 통합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자원활용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여야 한다.

사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아 투명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사회복지관의 역할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하여야 함
-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두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음

<표 12> 사회복지관의 사업(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례관리 기능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서비스 제공 기능	가족기능강화	1. 가족관계증진사업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역사회보호	1. 급식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의료관련 서비스 3. 경제적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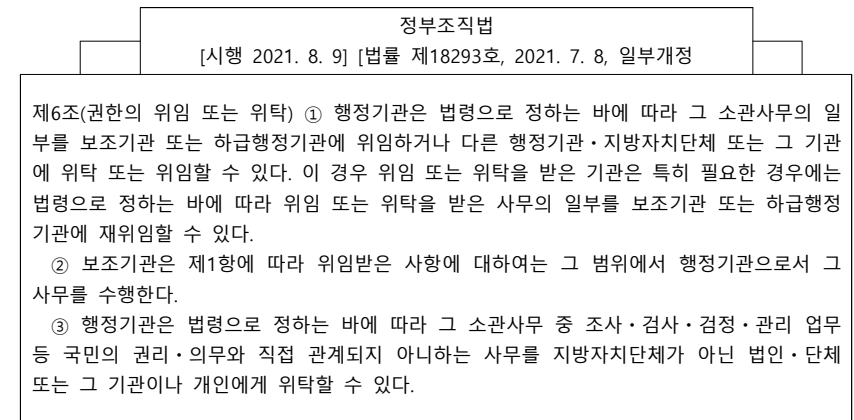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교육문화	1.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 :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문화 :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	1. 직업기능훈련 :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 :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육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육구조사, 실습지도
	주민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자원 개발 및 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 사회복지관 전체 바닥면적 중 1개 프로그램의 사업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은 사무실 등의 공간을 제외하고 사회복지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40%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존(2002년 이전)에 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명칭은 “○○사회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여야 함 (예 : “××사회관”, “××복지회관”, “××사회근로복지관” 등의 명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4.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및 정의

1) 법적 근거

-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있으며, 구체적인 정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민간위탁이라 함은 즉 정부의 사무를 민간에 맡김으로서 정부의 조직을 축소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기한다는데 그 중요목적이 있음
- 즉 문민정부 이후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자유화시대의 민간위탁제도와 한 발 더 나아간 민영화는 정부의 시장 개입 축소와 시장개방이라는 명제 아래 공공부문의 경쟁력 확보와 민간시장의 공공적 역할 강화에 목적이 있었으나, 그동안 경직된 정부사무에 민간의 활력을 불어 넣는 긍정적 측면과 사회서비스의 경쟁적 제공이 자칫 서비스의 소외 확대와 비용증대로 이어진다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였음
- 다만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위탁은 이미 6.25전쟁 이후 정부가 경제재건을 중요 국가책무로 삼으면서 발생한 사회복지 공백을 민간이 대신함으로써 민간위탁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다른 사무의 민간위탁과 그 차별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역사는 1986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가 가능해짐으로써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민간위탁의 정의

- 민간위탁의 정의는 법제적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의됨
- 민간위탁은 행정의 책임과 사무를 민간에 위임하는 제도로서 행정간여 축소와 민간의 자율적 참여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다만 민간위탁이 책임과 사무의 위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게 하고 있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시행 2021. 3. 1] [대통령령 제31505호, 2021. 2.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력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		

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1.>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의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음
- 이 기준에 따르면 특히,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관하여서는 제5조(민간위탁사무)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 사회복지기관의 민간위탁을 정당성을 인정하였음
- 또한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 또한 인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의회의 개입은 그동안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이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수탁과정에서의 부정, 운영 상에 있어서 불투명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에 기인함

[시행 2021. 8. 11.] [부산광

⑥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때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하며, 수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2011. 8. 10., 2019. 11. 6., 2020. 5. 27.>

<전문개정 2011. 8. 10>

III편 사회복지체계 내에서의 민간위탁 평가와 개선방안

1.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제도의 의의

1) 사회복지와 민간위탁제도의 목적

- 민간위탁제도는 1980년대 말에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제도가 정착된 것은 1993년 김영삼대통령이 당선되어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자유주의의 표방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김대중 정부 때 활성화되었음
- 다만,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위탁개념은 6.25전쟁과 우리나라의 고도발전을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여 왔으나, 이는 민간의 유연성과 효율성, 그리고 자유주의를 따지는 90년대 이후 민주화되면서의 민간위탁과 개념이 달랐으며, 민간에서도 시설운영적 측면에서 경직성, 비민주성이 만연하였으며,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시설 수용적 접근이 많이 이루어져 왔음
- 대부분의 민간사회복지시설 또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되어 부산에서도 형제복지원사건 같은 불법적 복지시설 운영이 만연하였음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제도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통해 시설의 공공성을 높이고 민주주의개념 속의 사회성을 가미한 형태로 발전하여 왔음
- 또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공공의 수용적 한계를 벗어난 결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복지수요를 민간에서 비영리단체 형태로 수용되고, 소비되는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제도가 한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음
- 따라서 공공사회복지시설은 민간위탁의 형태로, 공공서비스 제공 외의 비영리 단체의 사회서비스 제공은 바우처사업, 사회서비스 보조금 지원 형태로 발전해 왔음
- 이처럼 사회서비스에서 민간위탁제도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교집합적 영역에서 제3섹터를 이루고 상호 간의 불완전요소들을 보완하면서 발전해 왔음
- 그러나 최근 들어 보편적 복지 확대, 직접고용에 대한 노동권의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의 직접경영이 민간위탁사무 전반에서 일어남에 따라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민간위탁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더불어 민간시장에서도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등장은 늘어난 사회서비스를 민간시장에서 수용하고 소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2) 법률적 범위에서 사회복지와 민간위탁

-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조례로 2006년도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도입함으로써 민간위탁부문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 현재 부산광역시는 남구를 비롯한 16개 구 전체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 2021. 8. 11.] [부산광역시조례 제6463호, 2021. 8. 11.,
일부개정]

제5조(민간위탁사무)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노인·장애인·노숙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산업지원, 교통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국제회의시설, 문화·예술·영상·관광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노동자 복지, 직업훈련,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9. 그 밖에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무명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구·군 간의 균형 분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노동자 고용·노동 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자가 민간위탁 대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13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13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역할

- 민간위탁에 관한 남구의회의 역할을 사전과 사후로 구분됨
- 사전적 역할은 동의, 사후적 역할은 감시과 통제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의회의 역할 규정은 다수의 위탁가능한 사무가 정치적 및 기타 행정권한의 부적절한 적용에 의해 남용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의 예산 남용이나 탈법적 행위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통해 꾸준히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함

1) 사전적 역할

- 사전적 역할의 근거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청장은 1. 다른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동 조례 제4조 5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 2021. 8. 11.] [부산광역시조례 제6463호, 2021. 8. 11.,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시장은 위탁 대상 사무가 개별 조례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사무
2. 법령상 위탁 사무가 특정된 사무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포함)하려는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무
2. 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무
 - 가.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나.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하인 사무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때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하며, 수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노동자 노동조건
7. 수탁자 선정 방식
8.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10. 제13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재위탁의 경우에 해당한다)
11.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남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별도로 남구 사회복지관 등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5개 시설에 대하여 동 조례의 제8조에 의거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도록 규정하여 별도의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또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의회의 사전적 역할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2. 21.]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1095호, 2015. 12. 21., 일부개정]

제3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당로 258(우암동)에 두고 지게골로 139-33(문현동)에 지게골 분관을 둔다.
2.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에 둔다.
3.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7(용호동)에 둔다.
4. 장애인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남구 조각공원로11번길 38(대연동)에 둔다.
5. 노인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97-10(대연동)에 둔다.

제8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규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거나 평가실적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2011. 08. 01.>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시설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간사는 해당 시설관리의 부서장이 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시설을 위탁 운영할 법인이 결정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조치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으로서 사회복지관 운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은 동명대학교 재단으로서 학문과 사회복지의 연계고리로서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는 기관임
- 노인여가시설로서 지역사회와 저소득층 노인의 평생교육과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임

2. 위탁기관(남구)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 대체로 잘하고 있음
- 다만 담당자의 규정이 있는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뿐이라고 알고 있음. 따라서 너무 규정에 얽매인 행정이 종종 있음
-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요청됨
- 2010년 개장 이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에서 시설 확충과 추가 지원이 요청됨
- 비정규직은 외근직으로 돌봄서비스와 생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규직 14명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임

3. 부산광역시 및 남구에서 위탁금액 외에 별도의 지원사항은 무엇인가요?

부산광역시	•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무료급식사업 진행
남구	• 복지 시비/구비 매칭사업 •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없고 사업진행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가 부족함

4. 수탁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요?

- 수탁금액은 크게 문제 안됨
- 운영보조는 시비/구비 7:3 매칭으로 이루어짐
- 다만 고용인력의 인건비가 호봉 상승에 따라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수탁기관으로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니까?

- 8점
-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틀림

6. 위탁기관(남구)의 관리사항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요?

- 규정이 있다지만 결국 담당자의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도 바뀌는 것 같음
- 관리행정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배우는 바도 있음

7. 후원금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 후원금은 전체 세입에 3% 정도로 미미함

8. 수탁업무 외에 법인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학교법인으로 별도의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복지관 업무 외에 매칭사업으로 노인급식 등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9.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될 경우 복지관 및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이나요?

복지관 운영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거의 비대면으로 운영하여 왔음 •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방식의 복지관 운영방식을 고민하고 있음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또한 2년동안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옴 • 프로그램 진행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위드코로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본 복지관은 학교재단이 운영하는 관계로 위드코로나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임

[2] 남구장애인복지관

◆ 사회복지관 위탁 개요			
수탁 사회복지관명	남구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	(사)부산광역시 남구장애인협회		
연도별 결산 (기관별 결산공고 참고)	구분	2019년	2020년
	전체운영비(천원)	1,530,347	1,541,772
	보조금 수입(천원)	1,233,571	1,142,857
	비율(%)	80.6%	74.1%

1. 수탁기관으로서 사회복지관 운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각 구에 1개 기관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서비스 제공 지역이 사회복지관과 다르게 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함

2. 위탁기관(남구)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 5년 수탁기관동안 관리·감독의 책임이 남구에 있으므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위탁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3. 부산광역시 및 남구에서 위탁금액 외에 별도의 지원사항은 무엇인가요?

부산광역시	• 시비보조금 지원
남구	

4. 수탁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요?

- 수탁금액은 법인에서 복지관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법인전입금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5. 수탁기관으로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니까?

- 9점

6. 위탁기관(남구)의 관리사항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요?

-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연1회 지도점검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7. 수탁금액과 후원금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 1년 기준 법인 전입금 10,000,000원 대비 후원금은 233,000,000원(이월후원금 포함)입니다.

8. 수탁업무 외에 법인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사단법인남구장애인협회에서는 활동보조인 지원사업,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될 경우 복지관 및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이나요?

복지관 운영	•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운영매뉴얼 세분화 • 안전, 방역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강화 •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참여 인원의 소규모화 • 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유튜브, 카카오톡채널, 밴드 활용) • 이용자 대상 스마트기기 사용 등 교육 강화 • 사례관리사업 강화 •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프로그램 장소를 복지관 관내진행뿐 아니라 지역사회안으로 확대

[3]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 미응답

◆ 사회복지관 위탁 개요			
수탁 사회복지관명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		
연도별 결산 (기관별 결산공고 참고)	구분	2019년	2020년
	전체운영비(천원)	5,632,905	5,565,682
	보조금 수입(천원)	4,037,013	4,246,879
	비율(%)	71.7%	76.3%

[4] 용호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 위탁 개요			
수탁 사회복지관명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연도별 결산 (기관별 결산공고 참고)	구분	2019년	2020년
	전체운영비(천원)	3,703,659	2,937,236
	보조금 수입(천원)	2,701,976	2,214,747
	비율(%)	73.0%	75.4%

1. 수탁기관으로서 사회복지관 운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이슈 및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수요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 구축, 주민중심의 창의적인 복지서비스를 개발·운영, 복지자원 쉐어링을 통한 복지문화확산 등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다양한 복지이슈에 접근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전문화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인적, 물적 자원 동원 등 지역자원을 발굴,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거점기관으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2. 위탁기관(남구)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 부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타 구에 비해 민관협력이 매우 원활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위에서 의견을 밝힌 것처럼 최근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복지이슈와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대응하여야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이러한 민관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민관이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다양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이슈와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3. 부산광역시 및 남구에서 위탁금액 외에 별도의 지원사항은 무엇인가요?

부산광역시	별도의 지원 없음
남구	• 부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통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음. 이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남구는 타 구와 차별화된 지원을 복지시설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2020년 코로나사태 발생 초기 대응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에게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남구 내 방역체계 구축에 크게 앞장서고 있음 • 전체를 세세하게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각 부서별 지원이 매우 적극적이며, 특히 지원에 앞서 수탁시설의 입장이나 현재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의 소통이 원활함이 제일 큰 지원이라고 사료됨

4. 수탁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요?

- 본 복지관에서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전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위한 인건비와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취약계층 복지사업 및 주민주도형 복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가 필요함. 하지만 이는 지역 주민 및 기업 등의 후원기금 마련을 통해 복지사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함
- 본 복지관에서의 수탁금액은 복지관운영에서의 예산 부족분이 아니라 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연 1천 만원 정도의 수탁금액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5. 수탁기관으로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됩니까?
부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타 구에 비해 민관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만족도는 10점이라고 생각됨
6. 위탁기관(남구)의 관리사항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요?
정기적인 감사, 지도점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수시로 복지현장의 어려움과 현황을 파악하고 조율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를 통해 현장과 행정의 괴리를 예방하고 있음
7. 수탁금액과 후원금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수탁금액과 후원금의 비중은 2019년은 1,515%, 2020년은 1,297%, 2021년은 7월 말 시점으로 747%로 후원금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원활한 외부 연계 및 자원 발굴을 통해 후원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함으로써 전문 사회복지사업과 원활한 기관 운영에 사용되고 있음
8. 수탁업무 외에 법인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복지세상을 미션으로 시대적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문수복지재단을 비전으로 수립하고 있음. 수탁 외 법인에서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백세건강사업 :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건강 및 위생교육, 위생관리물품 지원 - 백세기원 장수잔치&생신잔치 : 칠순, 팔순, 구순, 상수 어르신의 장수잔치, 어르신 생신잔치 - 풍성한 명절나눔사업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명절을 맞이하여 생필품 지원 - 사랑 한스푼, 영양 한스푼 특식배달사업 :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국, 계절맞반찬 지원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특식지원사업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에게 영양식 및 외식제공 - 지역주민 욕구조사 : 남구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 보건, 주거, 경제, 환경, 문화 등의 욕구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 자원 개발 및 관리사업 : 후원 개발 및 관리사업 - 홍보사업 : 법인 및 산하기관의 사업 홍보

9.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될 경우 복지관 및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이나요?
복지관 운영 -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진행되어오던 복지관 운영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판단됨 - 강당 등에서 모여서 실시되던 교육, 프로그램, 홍보 등이 SNS, 전자통신기기, 인터넷 등을 활용한 비대면, 1:1 진행 형태로 활성화되거나 전환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기존 저소득 특화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열악하거나 정보접근성에서 소외되어 원활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한 운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프로그램 운영 - 기존 내방 및 집단 프로그램, 대면 형태로 진행되어온 프로그램이 방문 및 1:1개별 프로그램, 비대면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기존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시되어온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변할 것으로 판단됨 - 경로식당,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장애인복지프로그램보급사업(발달장애인 아동 조기발견프로젝트),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 주민주도형마을건강증진사업,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사업, 학교밖초등학교돌봄교실(쑥삭사람터),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5] 감만종합사회복지관 : 미응답

◆ 사회복지관 위탁 개요			
수탁 사회복지관명	감만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카리타스		
연도별 결산 (기관별 결산공고 참고)	구분	2019년	2020년
	전체운영비(천원)	2,459,734	2,195,478
	보조금 수입(천원)	2,049,904	2,051,730
	비율(%)	83.3%	93.5%

[6] 자체평가 종합

■ 전체운영비·보조금 수입

- 5개 수탁기관의 전체운영비는 2019년도에 176억원에서 2020년에 154억원으로 12.6% 감소하였음
- 최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비추어 2020년에 운영비의 감소원인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 특히, 남구노인복지관(26.2% 감소)과 용호종합사회복지관(20.7% 감소)의 운영비 감소 폭이 컸으며, 남구장애인복지관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약 0.7%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5개 수탁기관 합산 2019년도에 140억원에서 2020년에 129억원으로 7.6% 감소하였음
- 용호종합사회복지관(18.0% 감소), 남구노인복지관(17.7% 감소), 남구장애인복지관(7.4%)는 감소하였던 반면, 남구종합사회복지관(5.2% 증가), 감만종합사회복지관(0.1% 증가)은 증가하였음
- 전체 사회복지관의 전체운영비에서 보조금의 비중은 2019년도에 80.0%에서 2020년도에 84.2%로 증가하여 4.2% 의존도가 증가하였음
- 남구노인복지관(10.4% 증가), 감만종합사회복지관(10.1% 증가), 남구종합사회복지관(4.6% 증가), 용호종합사회복지관(2.4% 증가)은 증가한 반면, 남구장애인복지관은 6.5% 감소하였음

- 전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체운영비 및 보조금이 줄어 들었으며, 이는 전체 사회복지관 운영 위축을 의미함
- 복지관의 운영위축은 결국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복지행정의 어려움도 가중시킬 것임
- 따라서 위드코로나시대로의 전환 시 복지관의 역할 또한 맞춤형 업무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자체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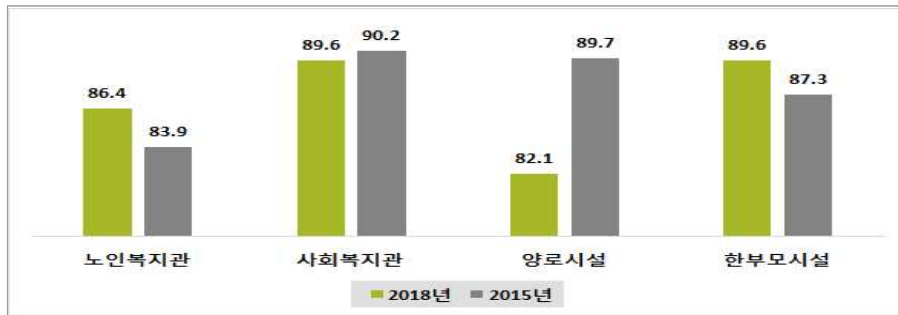
- 대부분의 사회복지관들이 코로나 이후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과 대면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은 복지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내었음
- 남구의 사회복지관 관리행정에 대하여는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잦은 보직이동과 전무성 부족의 문제점을 밝혔음
- 특히, 코로나에 대처한 사회복지관운영에 걸맞는 관리행정이 필요하나 공공복지행정의 경직성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확실적인 보조금보다는 사회복지관의 정성·정량적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산정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책정 고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됨
- 사회복지관별로는 후원금의 비중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자체사업 진행을 위한 별도의 후원조직의 필요성도 제기됨
- 또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특화사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관의 복지활동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 남구는 특별히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의회에서는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함

2) 위탁기관에 대한 정부평가(보건복지부)

[1] 시설유형별 평가

-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03개소의 3년간(2015~2017년) 운영 실적을 평가하였음(「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
- 평가 결과 4개 시설유형의 총점 평균은 87.6점으로 이전평가('15년, 87.9점)와 유사하며, 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8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반면 양로시설은 82.1점으로 지난 번 평가(89.7점)보다 7.6점이 하락하여 4개 유형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신규 평가시설이 크게 늘어나 평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음
- * 양로시설 104개소 중 39개소(37.5%)가 신규 평가대상시설

- 연도별·시설유형별 총점 평균현황 (단위: 점)



- 평가등급별로는 이번 평가대상 803개 시설 중 A등급은 583개소 (72.6%), F등급은 61개소(7.6%)로 나타남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90점 미만), C등급(70~80점 미만), D등급(60~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

- A등급 비율은 사회복지관 85.3% > 노인복지관 69.5%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9.3% > 양로시설 52.9%의 순이었음
- F등급 비율은 양로시설 14.4% > 노인복지관 8.9% > 사회복지관 7.1%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0%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평가영역별 평가

- 모든 시설유형의 영역별 총점평균이 80점 이상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표준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는 시설유형별 점수 차이가 12.6점으로 다소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13> 시설 유형별·영역별 평가점수

(단위 : 개소,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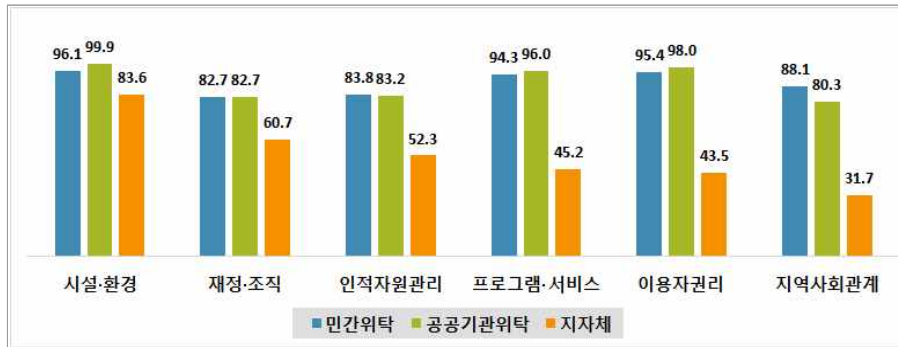
구 분	시설수	총점 평균	영역별 평가점수					
			시설· 환경	재정· 조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 관계
전체	803	87.6	95.3	81.1	81.6	90.9	91.8	84.0
노인복지관	246	86.4	96.8	85.4	79.4	89.6	90.2	80.1
사회복지관	340	89.6	96.0	78.5	83.3	93.4	93.9	87.3
양로시설	104	82.1	92.0	76.6	75.3	86.9	83.7	78.9
한부모시설	113	89.6	92.8	83.7	87.0	89.8	96.3	87.4

[3] 운영주체별 평가

-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공단(이하 공공기관) 위탁시설(16개소)은 평균 90.7점, 민간위탁시설(731개소)은 평균 90.6점으로 운영평가 결과 수준이 유사하나,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56개소)은 평균 48.5점으로 시설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의 평가가 낮은 주된 이유는 직원(공무원)의 잦은 인사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낮고,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자원 개발 업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운영주체별 / 평가영역별 평가점수

(단위: 점)



- 특히,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34개소는 2회(2015년, 2018년) 연속 ‘F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에 대한 운영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평가결과

- 조사대상이 안되는 남구장애인복지관을 뺀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A등급 이상을 받았음
- 평가지표수 및 배점

평가영역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배점(%)	배점(%)
A. 시설 및 환경	5	4
B. 재정 및 조직운영	10	4
C. 인적자원 관리	20	28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8	50
E. 이용자의 권리	5	6
F. 지역사회 관계	12	8
총계	100	100

○ 평가결과 등급

등급	A	B	C	D	F
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

○ 평가결과 등급

시설명	평균 등급	평가 영역별 등급					
		시설및 환경	재정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 관계
남구노인복지관	A	A	A	A	A	A	B

○ 개별시설 평가결과

시설명	평균 등급	평가 영역별 등급					
		시설및 환경	재정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 관계
남구노인복지관	A	A	A	A	A	A	B
감만종합사회복지관	A	A	B	B	A	A	A
남구종합사회복지관	A	A	B	A	A	A	A
용호종합사회복지관	A	A	B	B	A	A	A

[5] 조치계획

- 보건복지부는 미흡한 평가시설(D~F등급)에 조치계획
- 우선 ‘시설운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단’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도록 지원함
 - 2회 이상 연속해서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시설(F등급)은 명단을 공개하고, 시설유형별 운영기준 및 필수 기능 수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설명칭 사용제한, 운영주체 변경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임
 - 특히, 사회서비스원* 설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평가결과가 연속으로 미흡한 시설은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함
 - 사회서비스원 :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국·공립시설 위탁운영 및 종합계가서비스제공,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업무 등을 수행, ‘19년에는 서울·경기·대구·경남에서 설립

붙임 1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요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을 정기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추진경과) 법적근거 마련('98.7월), 1~2기 평가(보사연, ' 99~ '03년), 3~6기 평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04~ '16년), 7기 평가(사회보장정보원, ' 17년~)
- (대상시설 및 평가주기) 11개 유형 약 4,300개 시설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3년 주기로 평가 ('99년~)

<사회복지시설 그룹별 평가주기>

사회복지시설	5기 ('11~ '13)	6기 ('14~ '16)	7기 ('17~ '19)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411개 ('11년)	498개 ('14년)	660개 ('17년)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65개 ('12년)	839개 ('15년)	938개 ('18년)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14개 ('13년)	1,881*개 ('16년)	2,700**개 ('19년 예상)
소계	2,190개	3,218개	4,298개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약 500개), 장애인단기거주시설(약 100개) 평가 추가

** 별도로 평가하던 아동공동생활가정(약 500개) 평가를 사회복지시설 평가로 이관, 일부 소규모시설 평가년도 조정 가능

- (평가항목) 6개 영역으로 구분, 시설유형별로 43~59개 지표로 구성
- (평가영역)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추진절차) 지표개발→자체평가→현장평가→이의신청→확인평가→결과공개
- (결과활용) 평가결과 상위시설 및 개선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평가결과 미흡시설(D, F등급)에 대한 품질관리컨설팅 지원(1년)

붙임 2

'15년도 대비 '18년 시설 유형별·등급별 시설수 및 분포

(단위 : 개소수)

구분	합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전체	2018년	803	583 (72.6)	117 (14.6)	27 (3.4)	15 (1.9)	61 (7.6)				
	2015년	705	495 (70.2)	115 (16.3)	24 (3.4)	16 (2.3)	55 (7.8)				
	증감 ('18~ '15)	98	88 (2.4)	2 (△1.7)	3 (0.0)	△1 (△0.4)	6 (△0.2)				
노인 복지 관	2018년	246	171 (69.5)	38 (15.4)	8 (3.3)	7 (2.8)	22 (8.9)				
	2015년	210	141 (67.1)	25 (11.9)	6 (2.9)	7 (3.3)	31 (14.8)				
	증감 ('18~ '15)	36	30 (2.4)	13 (3.5)	2 (0.4)	- (△0.5)	△9 (△5.9)				
사 회 복 지 관	2018년	340	290 (85.3)	20 (5.9)	5 (1.5)	1 (0.3)	24 (7.1)				
	2015년	333	272 (81.7)	30 (9.0)	4 (1.2)	4 (1.2)	23 (6.9)				
	증감 ('18~ '15)	7	18 (3.6)	△10 (△3.1)	1 (0.3)	△3 (△0.9)	1 (0.2)				
양 로 시 설	2018년	104	55 (52.9)	23 (22.1)	5 (4.8)	6 (5.8)	15 (14.4)				
	2015년	66	39 (59.1)	23 (34.8)	1 (1.5)	3 (4.5)	0 (0.0)				
	증감 ('18~ '15)	38	16 (△6.2)	0 (△12.7)	4 (3.3)	3 (1.3)	15 (14.4)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2018년	113	67 (59.3)	36 (31.9)	9 (8.0)	1 (0.9)	0 (0.0)				
	2015년	96	43 (44.8)	37 (38.5)	13 (13.5)	2 (2.1)	1 (1.0)				
	증감 ('18~ '15)	17	24 (14.5)	△1 (△6.6)	△4 (△5.5)	△1 (△1.2)	△1 (△1.0)				

붙임 3

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시설(F등급) 명단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90점 미만), C등급(70~80점 미만), D등급(60~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

연번	유형	시도	시군구	시설명
1	노인복지관	강원도	강릉시	강릉노인종합복지관
2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노인복지회관
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군노인복지관
4			진주시	동락관
5				상락원
6				청락원
7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8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9			울릉군	울릉군노인복지관
10			청도군	청도군노인복지관
11			칠곡군	어르신의 전당
12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노인복지관
13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군 일로노인복지관
14			영광군	영광노인복지회관
15		영암군	영암군노인복지관	
16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군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17	사회복지관	강원도	양구군	양구종합사회복지관
18			양양군	양양군종합사회복지관
19			화천군	화천종합사회복지관
2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21			남해군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22			사천시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23				서부사회복지관
24			의령군	동부사회복지관
25				의령군종합사회복지관
26			하동군	하동군종합사회복지관
27			함안군	함안군종합사회복지관
28			함양군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
29			합천군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
30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군종합사회복지관
31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32			논산시	논산종합사회복지관
33			보령시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34			서산시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35		충청북도	진천군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붙임 4

지방자치단체 주도 시설평가 시범적용 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복지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시설환경이 개선되고 제공서비스가 표준화되는 성과를 보였으나,
- 전국공통 기준적용으로 인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평균점수의 상승으로 시설 간 경쟁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 발생

□ 개선방안

- 이용시설 평가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 추진
 -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시설운영의 편차가 크고, 사업비 부담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용시설의 평가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전환

<평가주체간 역할 재정립(안)>

	현행		개선(안)
중앙	계획수립, 지표개발, 평가단 교육, 결과분석 및 공개, 확인평가, 사후관리	⇒	지방자치단체별 계획검토 및 승인, 확인평가, 결과분석 및 공개
지방	현장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수립, 지표개발, 현장평가단 구성·운영, 사후관리

○ 평가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강화

-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수행하고 있는 시설 관련제도와 연계*하여 평가실효성 확보 및 피평가기관 부담 해소

* (예시)지도점검 사항으로 평가지표 대체, 시설환경 영역 점수를 참고하여 기능보강 우선순위 조정, 운영법인 선정 시 활용 등

□ 향후계획

- 서울·경기지역 이용시설 자체평가 시범적용('18~' 19년)
- 지방자치단체 주도 평가 모델 개발 및 타 시·도 확산('20년~)

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쟁점과 개선방안

1) 민간위탁 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 민간위탁은 공공행정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며, 이를 통해 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서비스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위탁행정이 친행정, 친정치적 시혜성 행정의 창구로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①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 ② 의회의 감시기능 강화, ③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

-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통일된 선정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작동되지 않도록 표준 공고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심사기준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심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의회의 감시기능 강화

- 의회의 감시기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고와 감사의 의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다만, 수탁기관의 지나친 감사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는 감사예고제를 도입이 필요함

■ 평가체계의 개선

- 수탁기관이 매년 평가를 위해서 평가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행정에서는 흠을 잡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상호발전을 위한 평가가 되도록 사전에 평가항목에 있어 수탁기관과의 세밀한 소통이 필요함
- 수탁기관의 지나치게 높은 목표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심사에서부터 현실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며, 조직·인사 등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편으로 평가체계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

2)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1) 쟁점사항

- 위탁기관의 선정의 문제는 대부분 ① 공고문, ② 평가기준, ③ 선정결과의 공개에서 발생함

■ 공고문

- 현재 남구의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로 통일하여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근거로 삼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공고내용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고부서(남구 노인복지관의 경우 주민복지과, 남구 장애인복지관,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감만종합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주민지원과)에 따라 공고문의 차이가 있었음
- 관리부서 또한 남구 노인복지관, 남구 장애인복지관은 주민복지과,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감만종합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로 이원화되어 있음
- 물론 복지관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구조의 문제는 평가기준, 선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남구 홈페이지에 등재된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의 경우 공고제목이 모집 공고(안)으로 올라와 있으며, 재공고 또한 재공고(안)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고번호도 나타나 있지 않아 공고문에 대한 논란을 제공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9-71호

용호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포함)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포함) 위탁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붙임 1】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9- 호

용호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포함) 위탁운영 법인 모집 재공고(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포함) 위탁운영 법인을 공개모집 공고하였으나 수탁신청법인이 1개 법인이므로 다음과 같이 7일간(2019.2.18.~2.25.) 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평가기준

- 남구 사회복지관들의 가장 최근의 위탁공고문을 검토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2017년 10월 31일)]과 나머지 [부산광역시 남구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2018년 1월 22일), 감만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2018년 3월 19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포함) 위탁운영 법인 모집 재공고안(2019년 2월 18일), 남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포함) 위탁운영 법인 모집 재공고(2019년 10월 18일)] 사이에 차이점이 있음
- 남구 노인복지관의 경우 자체 심사 점수(이외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부산복지개발원)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기관의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부산복지개발원)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또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의 공고문에서는 없는 반면 나머지 복지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심사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표 14> 공고문 구성

구분	시설 현황	위탁 사무	위탁 기간	위탁 비용	신청 자격	위탁 조건	모집공 고 및 접수	선정 및 통지	사업 설명회	제출 서류
남구노인복지관	○	○	○	○	○	○	○	△ (점수)	○	○
남구장애인복지관	○	○	○	○	○	○	○	○	○	○
남구종합사회복지관	○	○	○	×	○	○	○	○	○	○
감만종합사회복지관	○	○	○	○	○	○	○	○	○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재공고)	○	○	○	×	○	○	○	△ (심사)	×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 1098호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

8. 수탁자 선정 및 통지

가. 선정개요

(1)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신규위탁 가능 점수 : 총점 70점 초과

○ 영역별(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점수 충족률 : 50% 초과

구 분	심사영역			총 점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배점	40점	50점	10점	100점
최소 조건	20점 초과	25점 초과	5점 초과	70점 초과

※ 이외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부산복지개발원)

적용

○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

○ 단독 신청시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되, 심사결과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1) 구성인원 : 9명(공무원, 실천 및 순수전문가, 회계전문가 등)

(2) 심의내용 :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 종합평가

다.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발표 ⇒ 질의응답 ⇒ 심사의결

(1) 발표자료 : 사업계획서 PPT로 발표

(2) 발표시간 : 15분 내외 발표, 질의응답

(3) 발 표 자 : 법인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내정자)

(4) 발표순서 : 신청접수 역순으로 발표

라. 심의일정 및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및 남구 홈페이지 게재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8-75호

부산광역시 남구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

9. 수탁자 선정 및 통지

가. 선정개요

(1)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위탁 가능 점수 : 총점 70점 초과

○ 영역별(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점수 충족률 : 50% 초과

구 분	심사영역			총 점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배점	25점	55점	20점	100점

※ 이외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부산복지개발원) 적용

○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 점수를 합산하고, 나머지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가장 많이 획득한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

○ 단독신청 시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심사결과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1) 구성인원 : 9명 이내

(2) 심사내용 :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 종합평가

다.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발표 ⇒ 질의응답 ⇒ 심의의결

(1) 발표자료 : 사업계획서 PPT로 발표

(2) 발표시간 : 15분 내외 발표, 질의응답

(3) 발 표 자 : 법인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내정자)

(4) 발표순서 : 신청 접수순으로 발표

라. 심의일정 및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및 남구 홈페이지 게재

■ 평가개선방안

- 5개 사회복지관 중 유일하게 용호종합사회복지관만 수탁자 선정 심사표를 제공하고 있음
- 공고문에 나와 있듯이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를 이용하던지 개별 사회복지관의 특성에 맞는 심사를 위한다면 심사지표를 공고문과 함께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사회복지시설 위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심사기준을 별표로 포함시키든지, 의회의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남구에서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사업임을 감안할 때 현재 심사지표로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공공성에 대한 평가요소의 추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가중치 또한 타 지표보다 높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공공성 지표로서 추가될 수 있는 세부항목은 ① 수혜대상에 대한 서비스의 적절성, ②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③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④ 사업운영의 투명성, ⑤ 사업운영의 사회가치 지표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표 15> 공공성 지표 추가 사항

공공성 세부지표	항목내용
서비스의 적절성	- 수혜대상의 성격과 적격성 - 수혜대상의 수요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 서비스공급의 시장여건 - 강사의 확보 능력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 확보가능한 강사의 전문성 - 서비스 전문 연계기관
사업운영 투명성	- 운영위원회 구성 등 서비스 제공 투명성 확보 방안 - 사업운영 과정 및 결과 공개 여부
사업운영의 사회가치 지표	- 사회가치 지표 설정 방안 - 사회가치 관리방안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 지표 -공모-

□ 사회·장애인·노인복지관

1. 총괄표

심사영역	심사문항	심사항목	항목 수	배점	비고
가. 공신력 (25점)	A. 법인의 적격성 (10점)	A1. 법인형태와 정관	3	5	정량
		A2. 이사회 구성	4	5	정량
	B. 법인의 사업능력 (15점)	B1. 법인의 사업역량	3	5	정량
		B2. 법인대표의 추진의지	3	10	정성
나. 사업수행 능력 (55점)	C. 인적능력 (30점)	C1. 시설장의 전문성 및 추진의지	8	15	정량2, 정성6
		C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4	15	정성
	D. 운영능력 (25점)	D1. 시설(사업)운영실적	1	5	정성
		D2. 향후 운영계획	9	20	정성
다. 재정능력 (20점)	E. 재정부담 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20점)	E1. 법인 전입금 확보 정도	1	5	정량
		E2. 확보방법의 구체성	1	5	정량
		E3. 법인의 기본재산	1	5	정량
		E4. 법인의 부채비율	1	5	정량
합계			39	100	-

주) 정량 지표 : 사전 평가, 정성 지표 : 심의 당일 심의위원 평가

2. 세부내용

심사영역	가. 공신력
심사문항	A. 법인의 적격성
심사항목	A1. 신청 법인의 형태와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기에 적합한가?
배점	5점
주요질문	① 신청 법인 운영규정의 내용이 사회복지시설 수탁에 충실한가? ② 신청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내용이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의 연관성이 있는가?
근거자료	① 신청 법인 정관 ② 운영규정
세부항목	① 신청법인 유형의 적합도 (사회복지법인 : 2점, 기타 비영리법인 : 1 점) ② 신청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마련 여부 및 수준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5점, 없음 : 0점) ③ 법인 정관 목적사업 중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의 연관성 (있음 : 1점, 없음 : 0점)
심사결과	()점

심사영역	가. 공신력	
심사문항	A. 법인의 적격성	
심사항목	A2. 신청 법인의 이사회 구성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하고 운영은 활발한가?	
배점	5점	
주요질문	① 이사회 구성 인원 및 조직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② 적합한 이사회가 조직되어 있는가? ③ 법인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임시 이사회가 개최되는가? ※ 법인 설립 후 3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설립일 부터 현재까지의 이사회 실적 반영	
근거자료	① 이사회 구성관련 근거 지침 등의 마련 여부 ② 법인대표 및 이사회 자료 : 이사명단 및 주요경력(자격증), 이사회 개최 실적 증빙 자료, 이사회 조직도 등	
세부항목	① 전체 이사회 구성 인원 중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의 비율이 20% 이상이다. ② 법인 감사 중 회계관련 전문가가 1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법인과 관련된 친인척 등 이해당사자의 비율이 20% 이하이다. ④ 최근 3년간 법인 규정에 의거 정기 및 임시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5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 모두 해당
	4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 해당
	3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 해당
	2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 해당
	0	위 항목 중 해당 항목 없음
비고	①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 ㉠ 사회복지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이상 사회복지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대표이사 포함, 감사 제외) ※ 해당분야 : 대학 또는 대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② 회계관련 전문가 : 공인회계사, 세무사	
심사결과	()점	

심사영역	가. 공신력	
심사문항	B. 법인의 사업능력	
심사항목	B1. 법인이 신규 수탁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배점	5점	
주요질문	① 법인은 별도의 주사무소와 법인의 상근인력을 두고 있는가? ② 법인은 산하시설 운영기준(지침)을 갖추고 있는가?	
근거자료	① 법인 사무실 현장방문(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② 법인의 산하시설 운영기준관련 지침 및 관련문서 (업무수행 관련 방침,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등) ③ 법인 직원대장 및 직원 급여대장	
세부항목	①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규정,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없음 : 0점) ② 법인 주사무소가 있다(있음 : 1점, 없음 : 0점) ③ 최근 3년간 법인의 상근직원이 회계교육을 비롯한 위탁시설 관리와 관련된 교육에 연 평균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다(있음 : 1점, 없음 : 0점)	
	비고	① 사무소를 법인 산하의 직영시설에 두는 경우는 인정하되 위탁시설에 두는 경우 → 불인정 ② 주사무소는 유허가인 경우만 인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시설 내에 법인이 법인 주사무소를 두는 경우 → 0점 처리 ④ 시설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 법인업무 전담인력이 없는 것으로 함
심사결과	()점	

심사영역	가. 공신력	
심사문항	B. 법인의 사업능력	
심사항목	B2. 법인 대표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추진의지는?	
배점	10점	
주요질문	① 법인 대표의 대상 시설 수탁 이유와 운영의지는? ② 법인 대표의 사회복지에 대한 견해와 전문지식은? ③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에 대한 계획(장·단기 계획, 비전 등)과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는?	
근거자료	① 수탁 신청서(시설 운영 계획) ② 심의 당일 법인 대표 보고 자료 ③ 심의 당일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세부항목	① 법인대표의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의지 및 열의도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없음 : 0점) ②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에 대한 목표 및 중점 관리계획에 대한 견해의 수준 (매우우수 : 4점,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없음 : 0점) ③ 법인대표의 수탁 대상시설 관련 주요 복지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없음 : 0점)	
	비고	① 법인 대표의 운영의지는 심의 당일 참석여부, 질의응답 등을 고려하여 판단
심사결과	()점	

심사영역	나. 사업수행능력	
심사문항	C. 인적능력	
심사항목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추진의지와 전문성은?	
배점	15점	
주요질문	①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및 급수는 어떻게 되는가? ②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 사업법상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근무한 경력은 어떠한가? ③ 시설장(내정자)의 부산광역시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어떠한가? ④ 관련법령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가?	
근거자료	① 시설장(내정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② 시설장(내정자) 경력, 학위 증명서 ③ 최근 5년간 시설장(내정자) 대외 수상실적 관련 자료	
세부항목	①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정량지표) (10년이상 : 3점, 10년미만~5년이상 : 2점, 5년미만~3년이상 : 1점, 3년미만 : 0.5점) ②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 수준(정량지표) (1급 : 2점, 2-3급 : 1점, 없음 : 0점) ③ 시설장(내정자)의 신청 시설운영에 대한 이념, 비전, 목표 수준(정성지표) (우수 : 1점, 보통 : 0.5점, 미흡 : 0점) ④ 시설장(내정자)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정성지표)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⑤ 시설장(내정자)의 수탁 대상시설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정성지표)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⑥ 시설장(내정자)의 윤리성 및 도덕성 정도(정성지표)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⑦ 시설장(내정자)의 조직관리 능력 및 리더십(정성지표)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⑧ 시설장(내정자)의 대외 수상 실적(정성지표) (우수 : 1점, 보통 : 0.5점, 미흡 : 0점)	
	비고	① 시설장의 전문지식은 위탁시설과 관련한 법적·행정적·서비스 내용 및 체계 등에 대한 지식, 자격증 보유, 경력 등을 말함 ⑧ 최근 5년간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 업무 수행 관련 대외 수상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위원이 정성적으로 평가함. 대외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심사결과	()점	

심사영역	나. 사업수행능력				
심사문항	C. 인적능력				
심사항목	C2.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은?				
배점	15점				
주요질문	①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구성 및 채용계획은 어떠한가? ②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성 향상(교육 및 훈련) 계획은 어떠한가? ③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종사자들의 복리후생 계획은 어떠한가?				
근거자료	① 제출한 사업 및 운영계획서				
세부항목	① 직원채용 계획의 타당성 및 투명성 (매우우수 : 3점,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및 훈련 계획의 적정성 (매우우수 : 4점,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0점)				
	③ 향후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계획의 실현가능성				
	5	4	3	2	1
비고	④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매우우수 : 3점,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①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구성 및 채용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등 점검 ② 계획서 내에 직원의 채용, 교육·훈련, 복리후생, 업무환경 항목 점검			
심사결과	()점				

심사영역	나. 사업수행능력		
심사문항	D. 운영능력		
심사항목	D1. 신청 법인의 수탁 대상시설 관련 사회복지시설(사업) 운영 실적은?		
배점	5점		
주요질문	① 신청 법인은 수탁 대상시설과 관련한 사회복지시설(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가?		
근거자료	① 신청 법인의 사회복지시설(사업) 운영 실적(위탁운영 포함) ② 신청 법인의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세부항목	5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위탁 운영 포함)한 실적이 있으며, 우수하게 관리·운영함	
	4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위탁 운영 포함)한 실적 있으며, 보통 수준으로 관리·운영함	
	2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위탁 운영 포함)한 실적 있으며, 미흡 수준으로 관리·운영함	
	1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없음	
심사결과	()점		

심사영역	다. 재정능력	
심사문항	E. 재정부담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심사항목	E1. 수탁대상시설 운영을 위한 법인 전입금 확보 정도는?	
배점	5점	
주요질문	① 향후 위탁기간동안 신청 법인에서 시설 운영을 위해 부담할 전입금의 수준은 어떠한가? ※ 연평균 자부담은 백만원 단위로 제시	
근거자료	① 신청법인의 전입금 약정액(위탁계약서에 법인전입금 최소금액 명시) ② 신청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서 내 전입금 예산 규모액	
세부항목	5	연평균 법인 전입금 약정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
	4	연평균 법인 전입금 약정액 7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인 경우
	3	연평균 법인 전입금 약정액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인 경우
	2	연평균 법인 전입금 약정액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인 경우
	1	연평균 법인 전입금 약정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
	0	법인의 재정부담액이 없는 경우
	비고	① 법인의 전입금은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 한함 ※ 위탁기관(부산광역시, 구·군)에서 법인 전입금이 없는 조건을 명시하였을 경우, 비해당 처리
심사결과	()점	

심사영역	다. 재정능력	
심사문항	E. 재정부담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심사항목	E2. 법인 전입금 확보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배점	5점	
주요질문	① 법인 전입금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② 법인 전입금 승낙서 등과 같은 구체적 근거자료가 제시되었는가? ③ 법인의 재정현황과 비교하여 법인 전입금 총액은 적정한가?	
근거자료	① 이사회 회의록 ② 전입금 승낙서	
세부항목	5	이사회 의결시 전입금 부담 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되었으며, 전입금 승낙서 제시됨
	4	이사회 의결시 전입금 부담 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되었으나, 전입금 승낙서 제시되지 않음
	3	이사회 의결시 전입금 부담 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되지 않았으나, 전입금 승낙서 제시됨
	2	이사회 의결시 전입금 부담 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되지 않았으며, 전입금 승낙서 제시되지 않음
	비고	① 전입금 승낙서에는 법인(대표이사) 직인이 있어야 유효함 ※ E1 지표에서 자부담이 없는 경우 0점 처리하며, 비해당 처리되었을 경우 본 지표도 비해당 처리
심사결과	()점	

심사영역	다. 재정능력	
심사문항	E. 재정부담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심사항목	E3. 신청 법인의 보통재산 수준은 어떠한가?	
배점	5점	
주요질문	① 수탁 대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의 활용 가능한 보통재산의 수준은 어떠한가?	
근거자료	① 법인 재산 현황 자료 ② 현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세부항목	5	신규수탁을 하기에는 매우 적절한 재산을 갖고 있음
	4	신규수탁을 하기에는 비교적 적절한 재산을 갖고 있음
	3	신규수탁을 하기에는 부족한 재산을 갖고 있음
	비고	※ 상대평가 항목(별첨: 상대평가 항목 적용 비율 참조)
심사결과	()점	

<별첨> 상대평가 항목 적용 비율

신청법인 수	5점	4점	3점
1~2개 법인	1개 법인	1개 법인	-
3개 법인	1개 법인	1개 법인	1개 법인
4개 법인	1개 법인	2개 법인	1개 법인
5개 법인	1개 법인	2개 법인	2개 법인
6개 법인	2개 법인	2개 법인	2개 법인
7개 법인	2개 법인	3개 법인	2개 법인
8개 법인	2개 법인	3개 법인	3개 법인
9개 법인	3개 법인	3개 법인	3개 법인
10개 법인 이상 시 위의 적용 수에 따라 산출			

심사영역	다. 재정능력	
심사문항	E. 재정부담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심사항목	E4. 법인의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배점	5점	
주요질문	① 신청기준 법인의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근거자료	① 법인의 자산(기본재산+보통재산) 현황 및 부채비율	
세부항목	5	해당 법인의 부채는 전혀 없음
	4	해당 법인은 자산(기본재산+보통재산)의 10% 이내의 부채 있음
	3	해당 법인은 자산(기본재산+보통재산)의 11%-20% 이내의 부채 있음
	2	해당 법인은 자산(기본재산+보통재산)의 21% 이상의 부채 있음
심사결과	()점	

3) 수탁기관 관리 · 감독

-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현재 행정부서인 남구 노인복지관, 남구 장애인복지관은 주민복지과,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감만종합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 있음
- 다만 앞으로 사회복지업무의 다양화와 주민욕구의 증대는 수탁기관 관리 · 감독에 있어 단순히 행정의 측면에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행정부서, 구의회, 소비자단체의 역할에서 수탁기관 관리 · 감독을 분석함

(1) 행정부서

- 사회복지관은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국가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임
- 따라서 국가비용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이를 집행하는 수탁기관의 관계는 전형적인 예측관계를 가져 왔음
-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질적, 양적 제공이 행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수탁기관으로서의 한정된 예산으로 질적인 서비스의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2) 구의회

-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은 법률의 제정과 행정부의 감시에 있음
- 구의회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조례의 제정을 통해 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반대로 감사로서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관리 · 감독 또한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정치적 의도가 민간위탁의 수단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어 최근 들어 보다 투명한 위탁제도 운영에 있어 의회의 감시기능의 강화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표 21> 조례에서 나타난 의회의 참여 조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포함)하려는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조항 없음
제4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노동자 노동조건 7. 수탁자 선정 방식 8.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조항 없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10. 제13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재위탁의 경우에 해당한다) 11.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조항 없음
제8조의2(위탁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조항 없음
심의위원구성요건에 의원 참여요건 없음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시설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간사는 해당 시설관리의 부서장이 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시설을 위탁 운영할 법인이 결정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⑤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회계감사 등) ① 연간 위탁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 회계감사인 회계감사를 받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별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회계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없음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사조치 요구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조치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없음
제13조의2(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 보고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항 없음

[3]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 소비자는 사회복지관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일반소비자와 이 소비자를 대변하는 소비자단체로 구성됨
- 소비자단체는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등 직접 참여 대상자 단체인 동시에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는 수탁기관이 될 수도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보다 광범위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중심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대부분의 소비자의 평가는 이용만족도 형태로 조사되며, 일반적으로 수탁기관의 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항임
- 이러한 소비자 만족도조사 결과는 공적인 평가수단인 동시에 때로는 수탁기관의 홍보용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수탁기관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만 현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나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일반소비자의 심의 참여 규정이 없어 조례의 부분적 개선이 필요하며, 매년에 걸친 만족도 조사의 평가와 결과 공개가 이루어 질수 있어야 할 것임

<표 19> 조례에서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과 위탁기간의 갱신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9. 2. 6>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시설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간사는 해당 시설관리의 부서장이 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시설을 위탁 운영할 법인이 결정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사회복지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3.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⑤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개선방안

- 위탁관리에 있어 행정기관의 수탁기관에 대한 일방적 관리·감독에 대하여 의회와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도 한 방법이겠지만 결국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수탁기관의 자율적 규제와 자발적 행동에 있음
- 최근 들어 위수탁관계의 수평적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파트너쉽으로의 새로운 관계정립, 수탁기관의 임파워먼트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수탁기관의 위법적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경우도 있어 근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수탁기관의 관리감독기능의 유지와 전문성의 상호치환을 통한 상호 견제와 발전적 관계 유지가 필요로 함

<표 17> 서울특별시 협치협의회 민간위탁제 정책개선 권고안

권고	추진방향	세부과제
I. '신뢰와 협력 기반의 파트너십' 패러다임으로 혁신	1. 수탁주체의 경영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① 경영 전반에 관한 수탁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표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한 위수탁자간 자율경영협약 체결
		② 수탁자 주도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산운용 자량권 대폭 확대
		③ 협치친화적 평가체제로 전환
		④ 수탁기관의 재정적 지립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⑤ 위탁의 지속성과 혁신성의 조화를 위한 위탁기간 설정 및 신규 주체 참여 촉진
II. 투명성, 개방성 확대를 통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	2. 서울형 사회적가치사무를 수행하는 혁신형 민간위탁운영모델 도입	⑥ 민간협약모델 및 사회성과연계채권 모델 등 혁신형 민간위탁운영모델 도입
	3. 장기적 참여형 민간위탁 계획 수립체계 확립	⑦ 참여형 민간위탁계획 수립체계 확립
III. 예산편성 및 고용 등 현 민간위탁제의 불합리한 요소 개선	4. 민간위탁 운영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공개방안, 개방형 민간위탁기관 운영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⑧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운영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종합적 관리
		⑨ 개방형 민간위탁기관 운영위원회 운영 의무화
		⑩ 예산계획 수립, 인건비 산정, 민간위탁수수료 등 불합리한 예산편성 기준 재정립
		⑪ 좋은 민간위탁 일자리를 위한 고용관련 제도 개선
IV.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5. 회계제도 및 고용관련 규정 등에서 불합리한 요소 개선	⑫ 이행보증보험 요율 경감 등 수탁법인의 부담 최소를 위한 방안 마련
		⑬ 민간위탁사무 및 사업적격자 심의·선정 절차의 합리적 개선
		⑭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파트너십' 제도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자료 : 서울특별시 혁신형 민간위탁 운영모델 구축 위한 실행방안, 서울연구원, 2019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와 사후관리 또한 민의의 대표는 기구로서 반드시 필요할 것임
- 현재 남구의 사회복지관은 관련 조례가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정의하지 않고 있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참고로 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임

<표 18>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비교를 통한 위탁 선정 및 운영과정 비교

구분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사전동의	시의회 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 편성	규정 없음
선정	부산광역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이의 신청	선정 결정 15일 이내 이의신청 15일 이내 결과 통지(10일 연장 가능)	규정 없음
계약 체결	위탁기간 3년 이내	규정 없음
위탁기간 갱신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평가 후 3년의 범위에서 갱신 가능	규정 없음
사용료 등 징수	징수 가능	규정 없음
위탁 금지	재위탁금지(일부사무에 관해 시장의 승인 후 재위탁 가능)	규정 없음
회계감사	위탁금액 10억원 이상 사업연도마다 회계 감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결산서와 회계감사 제출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검사
지도·감독	지도·감독 인정되는 때 실시	수시 지도·점검
사무편람	시장 승인 후 작성 및 비치	규정 없음
처리상황 감사	시정조치, 임직원 인사조치 요구 인사조치 결과 시의회 보고	규정 없음
성과평가	위탁기관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 실시 후 시의회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규정 없음
교육실시	담당공무원 및 수탁기관 대상 민간위탁 사무 처리 교육 의무	규정 없음

4) 위드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

[1] 사회복지관 운영의 개선

- 위드코로나로 대변되는 사회복지관 운영의 방식변화는 ‘사회복지관 내부로 끌어 들이는 복지사업’에서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복지사업’으로 변화, ‘대면방식’에서 ‘비대면방식’으로 변화,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대처가 필요할 것임

■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복지사업

- 그동안 사회복지관은 남구에서 제공하는 시설인프라를 바탕으로 내부적 운영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위드코로나시대는 다수의 모임위주에서 개별적 서비스의 확대로 변화될 것임
- 공동체의 보호는 당연한 사회적 가치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역할을 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위드코로나 = 위드공동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함
- 따라서 공동체적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리행정에서의 긍정적인 요구와 더불어 수탁기관 내부에서의 호응이 반드시 필요한 바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평가체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역공동체사업 중점의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비대면 방식 강화

- 위드코로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본으로 하는 바 코로나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반드시 대면적 접촉이 필요한 복지수요 계층임
- 이는 복지사업이 단순히 물질적인 면에 앞서 정서적인 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사업이며, ‘사람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는 대면 서비스가 가장 우선되어야 함으로 비대면 방식과 대면방식의 적절한 혼합이 이루어 져야 함
- 따라서 무조건적 비대면 방식이 아닌 수요자의 심리적 안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소모임 방식의 강화가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한 집단적 접촉이 아닌 개별적 프로그램의 개선, 온라인 심리안정 지원 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됨

■ 사회복지종사자 복지 향상

- 남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코로나로 가장 위협받는 계층은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복지수요계층과 코로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종사자가 될 수 있음
- 특히, 코로나로 인한 피로도를 가장 많은 느끼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해 기본적인 근로기준 이상의 보장이 필요로 할 것임
- 이를 위한 정책 개발, 예산 확보, 사업 시행에 이르기 까지 남구 행정청과 남구 의회의 적극적이고도 합리적 절차이행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복지프로그램 개선

- 복지프로그램의 개선은 앞서서도 언급되었듯이 결국 비대면방식으로 대면방식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 특히, 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협력기반의 마련이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운용가능한 위드코로나 적응형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위드코로나 복지프로그램 개발

- 현재 복지프로그램 개발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남구의 사회복지관은 ‘남구 노인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뿐임
- 부산광역시에는 사회복지계열을 연구하는 대학·연구기관이 많은 바 산·학·연의 위드코로나 복지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위드코로나 복지프로그램 확산

- 복지프로그램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단체 상호 간의 사회가치 지향적 복지프로그램의 공유가 필요함
- 행정에서는 우선적으로 플랫폼의 개설을 통해 위드코로나 적응형 복지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복지프로그램의 개발에서 플랫폼을 통한 공유까지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

- 단순히 남구의 복지프로그램 공유플랫폼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부산광역시/남구로 이어지는 일관적 플랫폼의 개발·활용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 낭비요소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오픈형 양방향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제작과 소비에 참여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에서는 플랫폼 관리, 민간에서는 생산과 소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

- 사회복지네트워크는 단순히 사회복지관을 수탁받은 기관 간의 네트워크, 수탁기관과 수혜당사자 조직 간의 네트워크, 민·관·전문가 간의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음

■ 수탁기관 간의 네트워크

- 현재 남구의 5개 수탁기관들은 각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과 성격이 틀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은 유사함
- 특히, 수탁기관들이 위드코로나 시대 이후 내부적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전체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바 지역 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과 프로그램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들 기관 간의 적극적인 상호교류와 네트워킹은 남구의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상호평가와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수탁기관·서비스수혜 당사자 조직 간의 네트워크

-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혜받는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요구 또한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를 가질 수 있으며, 운영기관과 수혜대상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함
- 보통 수탁기관에서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으로 서비스의 수요조건을 파악하는데 이 또한 단편적일 수 있으며, 질의내용이나 분석의 방법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수혜대상자와 수혜대상자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더욱 요구됨
-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수혜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사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탁기관과 수혜기관 간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있음

■ 민·관·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 사회복지기관의 위탁사무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연결되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 현재 사회복지관의 자체평가에서도 나왔듯이 행정의 위탁 담당자와 수탁기관의 교육을 통해 상호 전문성 상승효과가 발현될 수 있으며, 전문가집단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사회복지관 운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특히, 운영위원회 제도를 통해 사회복지관 운영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관에서는 사회복지전문 임기제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제도 등을 통해 갖춘 인사회체에 따른 행정의 난맥상을 타계할 필요가 있음